

소사실과 같은 회합을 한 사실도 없으며 반국가단체 구성을 모의한 사실 등은 모두 허위날조된 것입니다.

공소사실 4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중학3년을 중퇴한 자이며 건축업에 종사할 시기라 상 피고인 여정남을 지도 교육할 능력도 없으며 시간적 여가도 없었으며 학생신분인 가정교사에게 북괴방송 청취지시 및 학생데모 배후조정, 북괴방송의 우월성을 찬양했겠습니까. 공소사실은 모두 허위날조된 것입니다.

공소사실 5항에 대하여

1970년 8월경은 상피고인 서도원을 피고인가에서 상면한 사실 없으며 상 피고인 여정남을 소개하고 인민혁명당 재건을 위한 공산 비밀지하조직을 결성지령 등 반국가단체의 구성과 내란모의 등 공소사실 모두 허위날조된 것입니다.

공소사실 6항에 대하여

1970년 8월경은 피고인은 대구시 남구 봉덕동 523-32로 이사를 온 후 4개월이 지난 시기이며 공소장에 기재된 장소에는 거주하지 않았으며 상 피고인 송상진 등 이재문 등과 회합한 사실 및 인혁당 재건을 위한 공산 비밀지하조직의 경북지도부 결성사실 등 공소사실 모두 허위 날조된 것입니다.

공소사실 7항에 대하여

1970년 9월경 상 피고인 정만진과 회합한 사실 없으며 반국가단체 구성 모의 등 공소사실 모두 허위날조된 것입니다.

공소사실 8항에 대하여

1971년 1월경은 대구시 남구 대봉동 소재 피고인의 질(姪) 공부방에서 상 피고인 서도원 등 여정남 등과 회합한 사실 없으며 공소사실 모두 허위날조된 것입니다.

공소사실 9항에 대하여

1971년 4월 15일경 상 피고인 서도원 자택을 방문한 사실도 없으며 4.19 제11주년 기념 전국대학생학생대회에서 발표한 선언문 작성을 의뢰한 사실도 없으며 의뢰받은 사실도 없으며 당시는 7.4 공동성명 전이라 만약 공소사실과 같이 북괴노선에 따른 외세 배격에 의한 자주적 남북평화통일을 주장했다라면 여정남과 7, 8명이 동선언문 사건으로 현지까지 대구지방법원에서 미결사건으로 처리되지 않았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소사실 10항에 대하여

공소사실을 시인하나 동 추도식은 사전에 경찰에 인지되어 거행하지 못하

였고 동 추도사는 사용하지 못하였으며 국민을 자극하고 정부를 불신 비방하는 내용이 아니고 노동자의 권익을 주장한 의인이며 정부가 옹분의 책임이 있다는 등의 내용이었습니다.

공소사실 11항에 대하여

1972년 2월부터 3월중순경까지 사이에 북괴노동당 제5차 대회보고문을 수록한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과 같은 목적으로 청취 수록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 자신이 북괴실정을 연구하기 위한 것이며 또한 상 피고인 송상진과 공동으로 작성한 것이 아니고 동 보고문을 청취 수록하던 중 동년 3월 중순경 피고인가를 방문할 시 상 피고인 송상진에게 피고인이 고향에 다녀와야 할 일이 있어 2일 분의 청취 수록을 부탁하여 그것을 피고인이 정리한 것입니다.

공소사실 12항에 대하여

1972년 3월 중순 경 상피고인 서도원과 회합한 사실 없으며 공소사실 등은 모두 허위날조된 것입니다.

공소사실 13항에 대하여

1972년 3월 중순 경 상피고인 여정남이 피고인가를 방문한 사실이 없으며 전시 북괴사업보고문을 수록한 노트를 제공 탐독케한 사실 등 모두 허위날조된 것입니다.

공소사실 14항에 대하여

1972년 4월경은 상 피고인 정만진은 본 피고인가를 모르고 동 여정남도 방문한 사실 없으므로 회합한 사실 없으며 동보고문이 수록한 노트를 제공 탐독케 하였다는 등 공소사실은 모두 허위날조된 것입니다.

공소사실 15항에 대하여

1972년 7월경 공소 외 이재문과 회합한 사실 없으며 보고문이 수록된 노트를 상피고인 이재문에게 탐독케 한 사실 등 모두 허위 날조된 것입니다.

공소사실 16항에 대하여

1972년 10월 초순 경 피고인가에서 상 피고인 서도원과 회합한 사실 없으며 동인으로부터 보고문이 수록된 노트를 빌려달라는 말도 없었으며 이를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공소사실 17항에 대하여

1972년 10월경 상 피고인 조만호와 피고인가에서 회합한 사실 없으며 이재형은 전연 모르는 사람이었으며 공소사실 등은 모두 허위날조된 것입니다.

공소사실 18항에 대하여

1972년 10월경 피고인가를 상 피고인 조만호와 동 이재형 2인이 1차 방문한 기억은 있으나 그 때는 이재형을 모르고 있었으며 회합한 사실과 보고문이 수록된 노트를 제공 탐독케한 사실 등은 허위날조된 것이며 그 당시 본 피고인은 다른 약속 시간이 있어 식모에게 차만 대접하라고 말하고 가출하였으므로 공소사실 등은 허위날조된 것입니다.

공소사실 19항에 대하여

1972년 12월경 포고령 위반으로 도피중이던 이현세가 피고인 자택에서 피신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이현세가 학생 신분이고 언제 체포될지 모르는 학생에게 북괴노동당대회에서 행한 김일성의 보고문이 수록된 노트를 제공 탐독케 하겠습니까. 공소사실은 모두 허위날조된 것입니다.

공소사실 20항에 대하여

1973년 3월 초순경 피고인가에서 상 피고인 여정남 동 임구호에게 노동당보고문이 수록된 노트를 제공 탐독케한 사실과 인혁당 재건을 위한 공산비밀지하조직인 경북지도부 구성 등 공소사실은 모두 허위날조된 것입니다.

공소사실 21항에 대하여

1973년 11월 초순경 상피고인 서도원가를 메추리 사육관계로 방문한 사실 있으나 공소사실과 같은 선언문 초안을 요청한 적도 없고 초안을 작성받은 사실도 없으며 피고인이 동 선언문 초안에 가필하여 상 피고인 여정남에게 완성케한 사실 등 모두 허위날조된 것입니다.

공소사실 22항에 대하여

1973년 12월 중순경 상피고인 서도원가를 메추리 사육관계로 방문한 사실은 있으나 공소 사실과 달리 상 피고인 여정남과 공소 외 이재문과의 충돌사건으로 여정남 피고가 대구에서 물의 대상이 되어 대구에 있기를 싫어하고 취직 겸 일어를 공부하겠다고 하면서 일어강습소 소개를 요청함으로 지면이 있는 일어강습소에 나가는 상 피고인 이수병의 학원주소를 피고인은 모르고 있어 상피고인 서도원에게 문의하여 동 이수병이가 나가는 삼락 일어학원 약도와 이수병의 인상을 말하고 여정남을 서울로 상경시킨 사실은 있으나 공소 사실과 같은 서울대학을 중심으로 한 전국적 학생조직 지시 등 모두 허위 날조된 것입니다.

공소사실 23항에 대하여

1973년 12월 중순경 피고인가에서 상 피고인 송상진과 회합한 사실 없으며 학생조직을 하기 위한 자금을 요청한 적도 없을 뿐 상피고인 여정남에게 상경 여비를 제공한 사실 등 공소사실 모두 허위 날조된 것입니다.

공소사실 24항에 대하여

1974년 1월부터 2월초순경까지 서울에서 상피고인 여정남을 2회에 걸쳐 대구(대구에 오다) 피고인을 방문한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과 같은 서울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은 적 없고 다만 이수병을 만났고 일어학원에 잘 다니고 있고 취직은 물색중이며 이수병 소개로 경기여고 교사인 김용원씨를 알게 되었다는 말과 서울 각 대학생들이 5, 6월경 반정부 데모를 할 계획이라는 말을 들었다는 말과 친구들이 도움으로 잘 있다는 말을 들었을 뿐이며 2월 9일 자금을 준 일도 없으며 상피고인 송상진으로부터도 돈을 제공받은 사실도 없으며 공소사실과 같은 서울 이야기를 상 피고인 서도원에게 이야기한 적도 없고 공소사실 등은 허위 날조된 것입니다.

공소사실 25항에 대하여

1974년 3월 18일경 상피고인 여정남을 만난 일이 없으며 서울이야기를 들은 적도 없으며 선언문 작성 요청을 받은 바도 없고 이를 서도원에게 이야기한 적도 없고 선언문 및 결의문을 작성케 한 공소 사실 등은 모두 허위 날조된 것입니다.

공소사실 26항에 대하여

1974년 3월 22일경 피고인가에서 상 피고인 여정남을 상면한 사실이 있으며 3. 21. 경북대학교 학생데모는 정보가 누설되어 실패한 이야기와 취직관계 이야기를 했을 뿐이며 동인으로부터 자금을 요청받은 일도 없으며 돈을 제공한 사실도 없으며 동월 24일 상 피고인 서도원과 회합한 사실 등은 허위 날조된 것입니다.

공소사실 27항에 대하여

1974년 4월 3일 23시 경은 피고인은 종형수(從兄嫂)가 사망하여 상가에 있는 관계로 대통령 긴급조치 4호의 발표를 못 듣고 4월 4일 지상을 통하여 알게 되었고 정부를 공산폭력혁명으로 전복시킬 목적으로 상 피고인 여정남을 통하여 민청학련을 조직케 한 사실과 금품을 제공한 적도 없고 데모시 사용할 유인물 작성 등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며 동 여정남의 서울에서의 동향을 모르고 있었고 민청학련에 관계하게끔 한 일이 없으므로 수사기관에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공소사실 28항에 대하여

1974년 4월 7일 상 피고인 서도원을 만나 4월 15일 상경하여 포경수술을 해야 하겠다고 말하고 동 여정남의 소식이 궁금하다고 말하니 동 서도원 피고인도 4. 15경 상경할 일이 있으나 서울서 만나자고 하여 서울에 있는 종질녀집 전화로 연락하기로 하였을 뿐 공소사실과 같은 동 여정남을

은신시킬 합의 등은 모두 허위 날조된 것입니다.

공소사실 29항에 대하여

1974년 4월 15일 서울서 상 피고인 서도원을 만난 일이 없으므로 공소사실 등은 모두 허위 날조된 것입니다.

공소사실 30항에 대하여

1974년 4월 15일 서울 신문로에 있는 덕수제과점에서 상 피고인 여정남을 만나 비로소 여정남으로부터 민청학련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여정남 자신의 신변이 위험하다는 말을 들었고 본피고인은 포경수술을 목적으로 상경하였고 16일 수술을 받아야 함으로 상면 못할 것이라는 말과 신변을 조심하라는 말을 한 적은 있어도 공소사실과 같은 지시 등을 모두 허위 조작된 것입니다.

공소사실 31항에 대하여

1974년 4월 15일 여정남을 만나 수술을 한다는 말을 하였고 4월 16일 서울 종로4가에 있는 동도사에서 포경수술을 받았고 동일 20시경 상 피고인 여정남을 만난 일 없으므로 공소사실 등은 모두 허위 날조된 것입니다.

공소사실 32항에 대하여

1974년 4월 17일 상 피고인 여정남을 만난 일 없으므로 공소사실 등은 모두 허위날조된 것입니다.

피고인 하재완은 해방 후 정치적 혼란기에 휩쓸려 남같이 배우지도 못하고 어려운 시련을 겪고 생각한 바 있어서 직장을 그만두고 군에 지원 입대한 후 많은 노력을 하여 육군특무부대로 전속하여 육군정보학교 육군특무학교를 마치고 대공사찰의 일선에서 만 5년간 근무하여 공산주의에 대한 상식과 공산당에 대한 실정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며 그 비판력도 배양하였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공산주의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내외문 제연구소에서 발간하는 책자와 반공연맹에서 발간한 북괴문헌집, 중국이념 논쟁문집 등을 탐독하였으며 최근에는 월간잡지인 북한이란 잡지를 매월 구독하여 탐독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생각하는 바는 적과 대결하여 싸워 이길려고 하면 적을 알아야 이길 수 있다는 말과 같이 공산주의에 대하여 알고 특히 북괴실정을 알고 그에 대한 비판력을 배양함으로써 남북대결에서 이념적으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며 승공 통일을 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의 하나라도 공소사실대로 북괴와 영합하는 통일된 공산주의 국가를 건설하겠다는 목적하에서 활동하여 그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본다면 피고인은 과거 대공사찰기관에서 5년간 근무한 사실만으로도 공산당의 숙청대상이 될 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일 것이며 6명의 처자식의 장래 또한 비참할 것인데 무엇 때문에 누구를 위하여 그와 같은 어마어마한 범죄를 획책했겠습니까. 원래 인간은 자기로부터 출발한다고 했습니다. 그러한 일을 하다가 죽음을 당할 것이고 이루어 놓은 후 또 한번 죽음을 당하는 자신의 불행을 자초할 바보는 이 세상에는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옵시는 대법원장님

본피고인은 앞서 말씀올린 바와 같이 어린 소년 시 남같이 배우지 못한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살아왔으므로 제 자식들은 힘이 닿는 데까지 남과 같이 가르쳐 보겠다는 일념으로 노력해왔으며 그것이 동기가 되어 상 피고인 여정남을 가정교사로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불행히도 그 가정교사인 여정남이 민청학련에 관계하게 되었고 피고인과 또한 관계가 되어 국가와 사회를 혼란하게 하였을 뿐 일곱 식구의 단란한 가정도 파탄 직전에 놓이게 한 그 책임을 통감하고 깊이 반성하는 심정으로 교화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현재 극형을 선고받은 위에 지병인 폐병이 악화되어 가고 탈흉증, 탈장으로 소화기능을 완전히 상실하여 정상적인 식사를 못하고 죽식으로 연명하고 있습니다.

존경하옵시는 대법원장님,

억울하게도 극형을 선고받은 위에 수술과 치료를 받지 않으면 불치병이 되는 신병으로 고민하고 있는 불쌍한 인간 하재완에게 단 한번의 갱생의 길을 열어주신다면 남은 여생을 어린 오남매의 장래와 한 가정의 행복을 위하여 충실할 것이며 힘이 닿으면 국가민족과 사회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맹서합니다.

마지막으로 원심 및 항소심에서 법률의 책임을 다하였는지 엄정하게 살펴 주셔서 피고인에게 억울함이 없도록 공정한 판결과 관대한 판결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1974년 12월 일

위 피고인 하재완

위 무인은 본인의 무인임을 확임함

교도관 백승원

대법원장님 귀하

상 고 이 유 서

서울구치소 재감중
상고인 송 상 진

본 적 경북 달성군 [redacted]
 주 소 대구시 남구 [redacted]
 성 명 송 상 진
 생년월일 1928. 10. 30
 직 업 양봉업
 죄 명 대통령 긴급조치 4호 등 위반사건으로 1974. 7. 11. 비상
 보통군법회의에서 사형선고를 받고 이에 불복이 있어 항소를 하였
 으나 1974. 9. 7 비상고등군법회의에서 기각 처분을 받은 바 이에
 불복이 있어 다음과 같이 상고합니다.

다 음

본 상고인은 청렴결백을 생활의 신조로 삼고 가사에 종사하던 사람으로
 서 초년부터 만추에 이르기까지 시골 밀원지를 돌아다니면서 양봉 관리를
 영위해왔습니다. 언제나 자연과 낭만을 벗삼아 연중 3분지 2라는 시간은
 산중에서 가계를 위하여 진력해왔습니다. 이번 대통령 긴급조치 4호가 발표
 되자 1974. 4. 28 구속되어 금년 4.30부터 수사기관에서 본 상고인의 소
 신을 쓰라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서 떠오르는 몇 가지 소신을 적었습니다.

그 골자는

- ① 민족자본을 육성해서 자립 경제 확립
- ② 실업자 보험제도를 마련하는 구휼책 수립(노자 협조에 의한 노동자
보호책)
- ③ 의료기관을 공중의 의료기구화(영국노동시책)
- ④ 자유방임의 투자낭비를 지양하고 혼합경제 채택해서 복지국가 경제시
책을 쓰는 것이 소신이라 했으며 저 북구의 스칸디나비아반도 제국의 고

소득 경제권과 같은 복지 사회를 희망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오전의 시간을 소요했고 오후부터는 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대략 회상해보면 ① 여러 사람의 이름을 호명하면서(전연 모르는
 사람이었음) 접선관계를 대라는 것 추궁 ② 자금의 출처 ③ 북괴와의 접선
 (상부선)들을 추궁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같이 하여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공포와 협박으로 심신을 위축케하여 극도의 위약상태를 만들어놓고 복지국
 가가 공산주의 국가 건설로 둔갑하였을 뿐만 아니라 관제 사상까지 조작
 성립케 되었던 것입니다. 이야말로 인권을 송두리채 박탈당한 채 수사가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공산주의 사상으로 공산주의 국가 건설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이고 사실
 에 합치하는 계획이면 계획을, 행위이면 행위가 있어야 할텐데, 어느 사실
 을 두고 한말인지 민주화운동을 잘못보고 공산화운동이라고 오인한 나머지
 왜곡하여 가형할 목적으로 성립시킬려고 한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등산한 1970. 8. 15을 공산주의 국가건설을 위한 것이라는 10년 전
 에 혐의 받은 인혁당 사건이 인혁당 재건이라는 명칭을 달고 둔갑하게 되
 어 반국가단체 구성으로 지도했다느니 하는 사실은 뚜렷한 증거 없는 추리
 날조 수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중대한 사실을 검찰관계서는 피의
 자의 자필진술서 하나 받지 않고 하부 수사를 일방적으로 관철하는데 수사
 는 끝났고 법정에서도 이 사실을 밝힐라치면 공산주의의 법정투쟁이니 하
 면서 봉쇄해버리는 형편이었으니 그 진상과 사실을 밝힐 수 없이 극형을
 받게 되었다는 것은 그 얼마나 가혹한 처사이며 억울한 사연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오늘의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와 민주주의가 국기로 되어있는 만큼 복지
 국가에 대한 동경, 언론자유에 대한 주장, 그 누구와도 제한 받지 않고 자
 유로이 등산할 수 있는 것이 민주주의 자랑이며 가치인가 합니다. 대법원
 장님과 재판장님의 공명무사한 판결을 내려주시기 바라나이다. 다음은 상
 고요지, 상고내용의 순서로 밝힙니다.

상고요지

1. 고문 및 위협으로 공포속에서 피의자인 본 상고인의 진술은 성립은 되
 었으나 임의성은 완전 무시당하고 진술서 및 진술조서는 사전 준비된 수
 사관의 구안된 내용을 낭독해준 것을 받아쓰게 하여 날인케 한 것임으로
 피의자로서 본 상고인은 그 전부가 이러한 경지였음으로 성립된 것은 모
 두 날조요 위기(僞欺)되어 있음으로 이 억울함을 공명정대히 밝혀주시옵

기 바라나이다.

2. 검찰수사는 극도의 심신의 피해를 받은 그 현장에서 검찰조사를 받기 직전에 공포와 가혹한 체형을 가한 후 그 고문수사관을 대동케하여 검찰수사를 진행시켜 피의자로서의 본 상고인 그 정당성을 밝힐 수 없는 상태를 만들어 군검찰관과 대동한 수사관 2명이 일방적인 강행수사이었다.(군검찰의 일차수사 시)
3. 검찰관은 수사관이 작성한 진술서를 일방적으로 시인시키면서 공포에 떨어 심신 허탈상태를 이용하여 공산주의 사상자라는 것을 강요케 되어 성립된 바 있다. 이것도 역시 고문수사관을 전화로 호출 대동하여 고문은 바로 시냐 비냐(예,아니오)는 직전에서 정신의 정상상태를 잃은 상태에서였다.(검찰의 2차 수사) 이와 같이 극도의 피해를 입은 현장을 벗어나지 않고 고문수사관도 한자리에서 공포를 주면서 성립케한 것이다.
4. 수명의 친구의 등산길 안내가 공산주의 정부수립, 인혁당 재건에 대한 조직이란 전연 무근한 오인된 공소내용이다.
5. 인혁당을 재건하여 대북지휘부를 구성했다는 것은 사실무근한 것이다.
6. 북괴평양방송의 제5차 사업보고문 청구수록은 의논한 사실이 없고 우연한 기회에 찾아가 대화를 받고 2회 분을 기록해준 것이지 공소장처럼 '자기의 지령과업으로 인식하고' 라 한 것은 과장된 해석이옵니다. 상기요지를 내용설명을 하겠습니다.

상고내용

1. 공소 전문에서 1970. 8. 15의 등산을 본 상고인이 공산주의 국가건설을 목적으로 동조세력을 규합하여 조직을 목적했다는 공소내용이운데 본 상고인은 당시 봉상을 대구에서 북으로 24Km떨어진 팔공산 중턱인 (경북 달성군 공산면 취무동 산부인사(부인사)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공소장에 기명된 상피고인 전재권 공소 외 전능 상피고인 서도원 외 수명이 부인사(고려시대의 거찰로서 속장경을 가치해 둔 곳)를 경유하여 동화사(경북 달성군 공산면 도학동 산중턱)주차장에서 귀구(歸邱) 코스를 정하고 본상고인은 부인사에서 동화사까지 도산 안내 해주고 되돌아왔습니다. 그 당시 본 상고인 신체의 장애로 등산에 참가 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봉군(蜂郡)을 관리하는 바쁜 환경에 있었음으로 시간적으로 불허케 되었습니다. 신체의 장애란 만성된 항문병이 치질로 장거리 보행은 그 통증이 심하여 등산이

보건 상 좋은 줄 알면서 할 수 없었던 것은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등산회를 만들어 등산한 것이 무슨 잘못함이나 있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공소내용을 본 상고인에게 혐의한다는 것은 오해요 억지인 것입니다.

근래 도시민은 목요일마다 가족동반 혹은 친구, 동창, 직장단체가 함께 도시공해를 벗어나 신선한 공기와 자연 속에 피로를 풀라는 등산회가 붐을 일으키고 있는 현실입니다.

본 상고인이 등산 한번 했다는 것을 가지고 공산주의 정부를 수립하는데 이념을 상통했다는 막연한 추리를 한다는 것은 너무도 엄청난 오인된 해석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당시의 등산한 여러 사람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조사해본다면 본 상고인의 정상이 명백히 그 전모가 드러날 것임으로 단순히 가형하기 위해서 억지해서 대정부투쟁 정비니 조직이니 하는 공소 내용 사실의 왜곡임을 주장합니다.

2. 인혁당 재건에 대하여

본 상고인은 본 사건에 대하여 공소장에도 명시된 바와 같이 1964. 7에 혐의를 받고 불기소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 사건이 이번에는 다시 재건이란 명칭을 달고 재건케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억울하고 불행스러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본 상고인에 인혁당 재건이란 재건을 강요당한 수사관의 수사 경위를 밝힘으로서 진상이 드러날 것임을 확신하는 바입니다.

1974. 6. 7. 21시경부터 중정 지하실에서 김상희 수사관으로부터 고문하겠다는 협박하에 낭독해주는 소위 그 내용인 즉 인혁당 재건에 대한 조직이었습니다. 이는 지난날 고문을 당하던 현장에서 공포와 협심증을 발작케 하여 김상희 수사관의 말에 의하면 '어떤 방법이라도 만들어내야하니 고문에 고생치 말고 내가 부르는대로만 쓰라.' 본 상고인은 사실이 아닌데 어찌 거짓을 쓸 수 있느냐! 한즉 법정에서 밝히면 될 것 아니냐! 하면서 고문협박은 계속 되면서 공포에 시달린 심신을 이용하여 성립케 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읽어준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이 진술서는 구치소에서 쓰게 되었다는 취지를 서두에 쓰게 하고 (실지는 중정지하실)

② 1970.8월 일자미상 경 대구시 대봉동 상 피고인 하재완가에서 공소 외 이재문과 같이 회합하고 인혁당 재건하여 경북지도부를 구성했다는 취지와 공소장 그 외 부분이었습니다.

여기서 지적해본다면 무엇 때문에 진술서의 서두에 구치소가 아닌 장소인데도 구치소였음을 위장하게 된 저의가 어디 있는지 이것은 기만날조된 사실을 신빙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하여 극형인 사형을 받게된 오늘의 처지를 형언필설로 다 할 수 없이 억울합니다.

이 진술서는 그 익일인 1974. 6. 8. 17시 경 그 진술서를 토대로 검찰관의 조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기 요지에서 밝힌 바와 같이 공산주의 사상을 가졌다는 것까지 위협강압으로 성립된 만큼 그 때의 상황이 그 얼마나 피상고인의 심정이 극도에 달했던 것인가는 형언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위와 같이 인혁당 재건에 대한 조작의 수사입니다.

다음 그 내용에 들어가서도

① 당으로서의 증거 될만한 것은 아무 것도 없고 혐의 받은 과거의 것을 구속된 사람을 연결시켜 날조했다는 것이 명백하다는 것입니다.

② 본 상고인은 상 피고인 여정남은 부지의 사람인데 함께 지도적임무에 종사했다는 내용은 그 사실이 무근 허위한 것입니다.

③ 인혁당 재건이란 상식을 벗어난 논리의 모순이라 하겠습니다. 당의 재건이란 이유가 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의 재건이라고 하면 적어도 오랜 역사를 가진 당으로서 대중에 공적이 쌓여 어떤 사회적 역사적 조건으로 위난에 놓여 잠적했다가 사회적 심연의 요구에 따라 서광을 보게 되었을 때 재건을 내세울 수 있는 법이지 무엇 때문에 모험에 찬 명칭이요 형벌의 자국만 남긴 실적만을 남긴 당의 소급 재건이란 생각마저도 할 수 없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위와 같이 인혁당 재건사업은 김상희 수사관의 사전 구안한 내용을 낭독해서 강제 필기를 시켜 검찰수사도 예의 검토 없이 김상희 수사관이 작성하여 성립시킨 본 상고인의 진술서를 편견적으로 강압하여 절대 성립에만 주력하여 공포분위기에 찬 환경에서 일보도 벗어나지 않는 상태이었고 오직 가형 일변도의 시인 수사이지 사실은 외면되었던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같이 오인날조로 극형에 처하게 된 본 상고인의 심정은 다만 사필귀정이란 존엄한 법의 힘만이 최후를 밝혀주셔 광명과 세계를 맞을 것을 바랄 뿐입니다. 이것이 곧 이 나라 민주주의와 인간의 권익보장이 기필코 있을 것을 확신하는 바입니다.

3. 북괴평양에서 방송된 조선노동당 제5차 당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문 청취수록에 대하여

본 피고인이 72. 3. 일자미상 경 인가합니다. 시골 양봉장에서 대구로 돌

아와 상피고인 하재원가에 들렀더니 상기한 사업총화보고문을 청취수록 하는데 몇 일간 시골손님이 와서 수록을 못하니 상피고인 하재원이 휴대한 라디오를 가지고 2회에 걸쳐 청취수록 해주고 시골 양봉장으로 돌아간 것입니다만 이것이 오인되어 공소장에 의하면 지령과업 삼을 결심하여 청취수록하여 상 피고인 하재원에게 편집케 했다는 것은 너무도 엄청난 과장된 해석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 당시 쓴 노트 조각도 이리저리 주서 모은 노트 쪽지임을 보아도 본 상고인은 상기한 공소내용처럼 계획적으로 시도한 것이 표시되지 않아 합니다.

지령과업이라면 특수한 정치의 사명과 임무를 띤 것이라 하겠는데 공개된 일반적 사실을 지령과업이란 오인된 해석인가 합니다. 차후로는 이 같은 일은 절대로 하지 않기를 깊이 반성하는 바입니다.

4. 상 피고인 전재권과 현재 이태환과의 관계에 대하여

상피고인 전재권은 1970.8.15 본상고인의 양봉장으로 등산와서 처음 인사를 교환하고 지면케된 사람입니다. 그후 1972.8 경부터 현영남대학 교수 권길중의 귀금속 보세가공공장을 공동 운영토록 소개한 후로 본 상고인이 저축해둔 돈을 대신동 시장상인에게 사채로 대전하는데 협조를 얻어오던 중 유류파동으로 석유제품인 파라핀을 사서 이득을 불려고 했던 것이 하락일로에 있어 생활이 궁한지라 금 5만원 정을 차용해서 그 일부는 처남의 입학금 조로 승리라사점의 점원인 장군에게 맞기고 나머지는 생활비로 쓰게 되었던 것이 자금출처의 고문으로 곧 학생활동 자금으로 둔갑하게 되었습니다. 그후 1974. 4. 22 피신할 때 금 3,000원을 차용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공소장처럼 지하당에 포섭했다, 지도위원으로 자금 제공하라는 등 전연 그러한 사실이 없습니다.

상 피고인 이태환은 본 상고인이 1968.5 경 개간 사업을 할 때 측량 및 허가수속을 의뢰하면서 지면케 된 사람으로서 동향이고 과거 교육계에 있었다기에 친한 정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후부터 사업에 자금이 부족하면 상호대차 관계를 해오던 차 1973.11경부터 상피고인이 경영하는 사무실 대구시 중구 대신동 시장로 소재에서 인가된 화공약품공장(공익사) 설립관계로 자주 만나 추천해 오던 바였습니다. 공소 내용처럼 없는 지하정당 가입을 권유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고문에 못이겨 자금출처라면 거저 일상 친밀히 지내고 거래가 있는 사람을 주서대는 도리밖에 없었으므로 상기 양피고인에 대해서는 현재도 양심에 가책을 받은바 큼니다.

상기한 것이 본 상고인이 겪은 바를 상고이유로 제출하는 바입니다. 결론으로 본 상고인이 공소장 및 진술내용에 대해서 한번도 인적관계를 대질시켜주지도 않고 강제 작성되었다는 것은 유감된 일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검찰조사가 극형인 사형에까지 내리게 된 증거를 자필진술서 하나 받지 않았다는 것은 인간의 생명을 너무도 간단경박하게 처분하려는 것은 가혹한 처사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는 법앞에서 만인의 평등과 자유를 실현하고 기본적 인권을 보장 확립하는데 있다하겠습니다. 한 인간이 공포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경지에서 상기와 같이 조사하여 극형인 사형에로까지 가혹한 형량을 받게 되었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억압된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바로 공정무사한 준엄한 법의 판결 판단만이 해결할 것이라고 신심을 가지신바입니다. 본 상고인은 국법의 존엄이 반드시 원칙을 방정하여 주실 것을 신뢰하면서 상고하는 바입니다.

1974. 12. 14.

위 상고인 송상진

위 무인은 본인의 무인임에 틀림이 없음을 증명함.

교도관 송정식

상 고 이 유 서

피고인(상고인) 서도원

피고인(상고인) 하재완

피고인(상고인) 송상진

위피고인 등의 변호인 변호사 조성기

위 피고인 등에 대한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 등 피고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등의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상고 이유를 밝히는 바입니다.

다 음

원심판결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위반이 있을 뿐 아니라 중대한 사실의 오인을 저지르고 있고, 나아가서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한 것이라고 사료하는 바입니다.

피고인 서도원에 대한 공소사실은 23개 항목으로 되어있읍니다마는 위 피고인은 그중 7가지 사실(공소사실 중 6, 7, 9, 18, 21, 22, 23)만을 시인(목적은 제외)하고 나머지 사실에 대하여는 전부 부인하고 있고, 피고인 하재완에 대한 공소사실은 32개 항목으로 되어있읍니다마는 위 피고인은 그중 6가지 사실(공소사실 중 10, 11, 12, 13, 15, 19)만을 시인(목적은 제외)하고 나머지 사실에 대하여는 전부 부인하고 있고, 피고인 송상진에 대한 공소사실은 8개 항목으로 되어있읍니다마는 위 피고인은 그중 한가지 사실(공소사실중 3)만을 시인(목적은 제외)하고 나머지 사실에 대하여는 전부 부인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등은 수사기관에서 여러 가지 사항에 관하여 진술하고 자필진술서를 써서 제출한 바 있습니다마는 위 모든 것은 본의아니게 그렇게 된것이라고 극구 변명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등에 대한 공소장의 전체줄거리를 훑어보면 피고인등은 공산주의자로서 공산주의 사회 건설 또는 인민혁명당

재건을 위하여 공산비밀지하조직의 경북지도부를 구성하고 공소 외 여정남을 뒤에서 조종사수하여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을 조직케하고 학생데모, 민중봉기 등을 유발케하여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하고자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은 목적을 위한 행동 또는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전적으로 부인하고 있으며 피고인등의 변호인은 1심, 2심에서 위 여정남등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환문(소환하여 질문)하여달라고 신청하였으나 허용되지 않았으며 1심, 2심은 오로지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등에 대한 피의자진술조서 또는 자필진술서(피고인 등이 본의 아니게 작성되었다고 극구 주장하고있는)등으로 사실을 인정하고 있음은 심리 미진으로 인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을 저지르고 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본건에 적용된 대통령 긴급조치 1호, 4호는 헌법 11조에 저촉되는 조치 또는 입법이라고 보겠습니다. 헌법 11조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행위를 소추되지 아니한다고 되어있는데 피고인 등에 대한 소추사실은 위 긴급조치 공포 이전의 행위 등으로서 위 행위등을 처벌한다는 것은 헌법11조 위반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아가서 위 긴급조치 1호, 4호는 본 건 2심 판결 선고 이전에 해제되었으므로 원심으로서의 형사소송법 326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마땅한 것이었는데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을 위 형사소송법 326조에 위배한 판결을 하였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건에 있어서 대통령 긴급조치 1호, 4호의 공포 및 해제의 전후 경위와 수사과정 및 1심 2심의 재판 상황과 피고인등의 변호 등 제반 사정을 세밀히 살펴보면는 피고인등에게 일률적으로 사형이라는 극형으로 임한다는 것은 양형이 심히 부당한 경우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앞에서 말한바 본건 피고인 등에 대한 사실 인정 문제, 법률 적용 문제, 양형 문제 등 다각도로 깊이 살펴주시고 피고인 등에게 억울함이 없도록 다시 재판 받을 수 있는 기회(원심파기)를 부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1974. 11. 28

피고인 서도원, 하재완, 송상진의

변호인 변호사 조성기

대 법 원 귀 중

사건번호 74도3323 (74형3344)

상 고 이 유 서

서울구치소 재감중
피고인 이수병

사 건 명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

본 적 경남 의령군 [REDACTED]

주 소 서울 서대문구 [REDACTED]

성 명 이수병

생년월일 1938. 4. 17

주 문

비상군법회의에서의 판결은 형언할 수 없는 고문 협박 등의 강압적 방법을 통하여 사실을 임의로 왜곡 확대시켜 놓은 각본적 진술조서와 피고인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기회나 분위기가 전혀 보장되어 있지 않는 살벌한 공판정에서 거의 비공개적으로 행해진 판결이므로, 이것은 증거능력 없는 증거를 기초로 하여 형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피고인의 인권이 완전히 묵살된 상황속에서 진행된 심히 부당한 재판일 뿐만 아니라 그 양형이 민주국가에선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중형이라 사료되옵기에 이에 불복 상고를 제기하는 바입니다.

상 고 이 유

1

정부전복 기도에 관한 부분

저는 상 피고인들과 더불어 절대로 정부 타도와 같은 의도를 품어본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럴 힘도 준비도 전혀 갖추지 않았음을 밝힙니다.

사실 오늘의 정부는 경제성장 등을 통하여 민심을 확고히 장악하고 있는

유사 이래 가장 강력한 정부인 까닭에 폭력이나 데모 따위로 무너질 정부도 아니거니와 대체할 수권세력이 현실적으로 존재치 않기 때문에 설사 4.19와 같은 사태가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정권이 교체될 가능성은 희박한 것이며, 더구나 폭력혁명을 기도운운하나 민주대한에서 국군 이외의 반국가적 무장력을 조직한다는 것은 실제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임은 오늘날 국민들의 건전한 상식인 것입니다. 현실이 이러할진대 주식회사 하나 제대로 차릴 만한 인원조차 못되는 저희들이 어떻게 그 어마어마한 정권타도와 같은 일을 꿈엔들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들은

1) 인혁당 재건하겠다는 모의는 커녕 그런 대화마저 나눈 일이 한번도 없습니다. 공소장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제로 명칭도 없고 규약 강령도 없는 정당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더구나 저는 과거에 인혁당인가 하는 조직에 관여한 일도 없을뿐더러 알지도 못하는 일인 것입니다.

2) 그리고 우리는 4인 지도부를 조직한 일이 없습니다. 다만 1973년 10월 경 우홍선의 초청으로 충무로 소재 지압연구소의 개업식에 들린 길에 몇 사람이 우연히 그 인근 다방에서 차를 마시면서 잡담을 나눈 일이 있으나 1974년에 들어서는 전혀 만난 일마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왜곡하여 마치 무슨 비밀지하조직이나 한듯이 꾸며져 있으나 이것은 완전히 조작일 뿐만 아니라 소위 4인 지도부에서 서도원, 도예종을 지도위원으로 추대했다는 것도 허무맹랑한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의 허위성은 공소장에서 마치 지하조직을 한 것 같이 건강부회하면서도 실은 수괴도 없는 조직이 되어있고, 그 조직의 성격이 마치 공산당식 비밀지하조직이거나 한듯이 우기면서도 실은 지극히 비공산주의적 조직방법인 하급기관에서의 지도위원 추대와 같은 자가당착의 사건으로 꾸밀 수 밖에 없었던 사정으로 미루어 보더라도 스스로 증명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도원과 도예종의 지시나 김용원으로부터의 보고와 같은 일이 많은 것 같이 열거되어 있으나 우리들에게는 지령할 기관도 없었고 보고할 대상도 없었던 것입니다.

3) 그리고 공소장에 의하면 소위 집회나 모의의 장소가 거의 다방이나 주점이 되어있는데 과연 우리나라의 다방이나 주점의 구조가 국가변란을 논의할만한 곳인지 어떤지는 삼척동자에게도 자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천후좌우로 낯선 사람들과 맞붙어 앉아 있는 곳에서 어떻게 그런 무시무

시한 대화를 나눌 수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다방이나 주점 출입은 오늘을 사는 도시인의 하나의 생활양식이나 다름없거늘, 아는 사람들끼리 만나 함께 차나 술을 한잔 나누어 마시는 애뜻한 인정마저 어떤 뜻을 지닌 비밀집회가 되어버리고 인간이기에 누구나 자연스레 나눌 수 있는 잡담들마저 어떤 무서운 내용을 지닌 음모나 모의로 바뀌어 버리는 이 비정한 현실은 도대체 오늘의 이 사회가 자유로운 민주사회인지 어떤지를 의심치 않을 수 없게 합니다.

더구나 김한덕, 황현승, 이창복과 같은 사람과는 정치적 대화를 나눌 사이도 아니거니와 전혀 그런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차 만나 모의한 것처럼 조작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김용원, 유진곤, 김종대와 같은 어릴 때부터 친구인 우리들 사이에서는 언제 어디서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를 기억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기억착오, 교묘한 심문 방법을 십분 활용하여 마치 사실이거나 한듯이 일시 장소 대화내용 등이 임의로 날조된 사실은 반듯이 밝혀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4) 그리고 저는 소위 민청학련에 관여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 학련에 관계가 있다는 여정남을 우연히 김용원에게 소개한 일이 있습니다. 다만, 그 이후엔 여정남을 한번도 만난 일이 없을뿐더러 그나 김용원으로부터 민청학련에 관한 의논을 받아 본적도 없습니다. 더구나 그는 서울에 주거도 없고 수학한 일도 없는 사람이므로 사실상 서울의 학생들에게 아무런 영향력도 미칠 수 없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5) 그리고 검찰관 논고에서 사망한 강무갑으로 받은 돈이 마치 비밀지하조직을 위한 자금인양 주장했으나 그 돈은 공소장에 기재된 것처럼 그의 개인 재산이 개인적으로 전달되었을 뿐이라는 점, 그 돈이 2년 동안이나 고스란히 보존된채 어디에도 사용되지 않았다는 점, 그 금액으로선 정당을 조직하기엔 너무나 소액이라는 점, 그리고 그는 고향선배로 나의 생활을 걱정해 주던 사람이라는 점등을 미루어 보더라도 그 주장은 어불성설일 것입니다.

2. 유신체제 비방에 관한 부분

정치적 욕망 같은걸 갖고 있지 않는 저로서는 유신체제를 비방하거나 개혁을 주장하는 것 같은 일을 할 까닭이 없습니다.

시사를 논의하고 살림살이를 걱정하는 것은 민주시민의 평범한 일상생활이 거늘 물가고나 유류가 양등을 걱정하면 이것이 곧장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비방이 되고 국민의 기본권이나 신문에 보도된 학생들의 주장을 화제에

올리면 이것이 곧장 유신체제에의 도전이 되어 결국 그 어마어마한 긴급조치 위반이 되어버리니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이처럼 각박한 사회가 되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냉철히 생각해 보면 정부시책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될 적에 국민된 자 누구나 비판할 수 있는 자유의 보장이 민주사회가 갖는 제도적 우수성이거늘 반정부적인 의사조차 표현한 일도 없는 저희들을 엉뚱하게 반국가적인 의도를 품은 집단으로 왜곡확대 시켜 차단하려는 이 너무나 가혹한 인권침해에 우리는 목놓아 통곡할 수 밖에 없습니다.

3. 공산주의 사상 포지에 관한 부분

저는 절대로 공산주의 사상을 포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나름대로는 자유와 평화를 갈구하는 하나의 민주주의자임을 자부합니다. 국가의 발전뿐만 아니라 공산주의에의 중국적 승리나 민족의 통일도 결국은 오직 이 민주주의의 구현을 통한 체제적 승리로서만 가능하다는 것이 저의 확고한 신념인 것입니다.

1) 따라서 저는 서도원이나 도예종으로부터 소위 공산주의적 교양을 받거나 국가변란을 모의한 일이 없을 뿐만 아니라 증거로 제시된 두권의 서적(재벌과 빈곤, 민족혁명)도 실은 대한민국에서 몇몇이 발간된 것이거나 비공산주의적 서적에 불과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증거가 없는 것이 특색이라는 논고가 스스로 웅변하듯이 아무런 증거도 없이 필요에 따라 마구 공산주의자로 규정해 버리는 이 전근대적인 매카시즘에 그저 아연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간첩과의 관계를 추궁하려 무턱대고 가해지는 그 목불인견의 고문 속에서도 것처럼 결백한 우리들이온데 달리 무슨 방법으로 우리들의 심증을 밝힐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취조기간 중에는 민족사회주의나 사회주의나 하는 용어들이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공소장에서 갑자기 공산주의자로 둔갑해버리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갈피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그 권위있는 종교재판의 준엄한 판결에도 불구하고 지구는 오늘까지 계속해서 돌고 있듯이 어떠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끝까지 자유와 평화를 사랑하는 하나의 민주주의자로 존재할 것입니다.

2) 공소장에서는 작년 12월부터 서도원의 권유로 복귀방송을 들었다고 지적하고서는 그 보다도 훨씬 이전인 동년 1월에 벌써 유진곤에게 방송 청취를 권유했다는 따위의 전혀 상치되는 내용을 주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위 당보고문인가 하는 녹취노트를 김용원, 김종대에게 읽게 해

주었다는 주장마저 곁들이고 있으나 전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사실상 7시 새벽강의를 맡고 있었던 제게는 응암동에서 청진동까지의 승차시간과 출근준비의 소요시간을 감안해보면 도저히 새벽방송이란 들을 수가 없는 것임은 명백할 것입니다.

4. 진술의 임의성 문제

우리는 삼엄한 긴급조치하에서 피의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형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인권보호를 위해 형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여러가지 기본권을 완전히 박탈당한 채 편리에 따라 무제한 연장되는 그 악몽 같은 조사기간 동안에 사경을 헤매어야 하는 몸서리치는 고문과 협박속에서 수사관과 검찰관이 동일 장소에서 행하는 조서 작성 등의 처사에 완전히 전신을 잃고서 그것이 장차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든간에 자신의 나약을 통감하면서 당장엔 요구하는대로 횡설수설치 않을 수 없었고, 사실과는 전혀 다르게 조작된 줄을 뻔히 알면서도 자신의 비굴을 자학하면서 바보처럼 제 손으로 무인을 찍어야만 하는 처절한 극한 상황앞에서 우리는 인권이나 양식이니 하는 따위의 사치스런 개념을 논하기 이전에 결코 더는 버티나갈 수 없는 체력적 한계에 부딪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민주사회에선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조건 속에서 날조된 진술조서이기에 이 진술엔 전혀 임의성을 인정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더구나 우리들에게 법정에서조차 사실을 밝힐 진술의 기회가 부여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어언 8개월 동안 가족접견은 고사하고 변호사와의 면담기회조차 극도로 억제된 가운데 병신이 다 된 몸으로 신음하면서도, 그리하여 인생 그 자체에 허무를 느끼면서도 천도는 사필귀정일 것이기에 손톱 만큼의 허위도 통할 수 없는 대법원에선 진실을 그만큼 더 통쾌하게 밝혀질 것이며 열사람의 죄인을 놓칠지언정 한사람의 죄인이라도 조작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란 확신을 갖고서 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5. 저는 이제 그 경과나 법률적 해석이야 어떻든 국가와 국민에게 여러가지 번거로움을 끼치고 죄없는 가족들마저 더할 수 없는 고통속에 몰아넣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서 앞으로는 부귀공명 따윈 아예 다 잊은채 진정 조용하고 충실한 한 사람의 국민으로 살아가려 다짐하고 있사오니 부디 한번 재생의 기회를 베풀어 주시옵기 간곡히 비읍니다.

끝으로 민주주의 수호의 최후의 보루인 자랑스런 대법원에 찬란한 영광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1974년 12월 13일

상고인 이수병

위 무인은 본인것임을 확인함.

교도보 박완순

사건번호 74도 3323

상 고 이 유 서

서울구치소 재감중
피고인 김 용 원

본 적 경남 함안군 [redacted]
주 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redacted]
직 업 경기 여고 교사
성 명 김 용 원(金鏞元)
생년월일 1935년 11월 10일생 (만39세)
사 건 명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

위 상고인은 1974년 7월 11일 비상보통군법회의에서 사형선고를
받고 비상고등군법회의에 항소했다가 동년 9월7일 기각당하여 그
판결에 불복한 자로서 다음과 같이 상고 이유서를 제출합니다.

이 유

본 상고인은 청년 시절부터 자연 인간 사랑 자유 등 추상적이고 형이상
학적인 문제 속에서 깊은 고뇌에 빠져 살아왔습니다.

이러다가 결혼 후 자유와 행복을 구체화, 현실화 할 수 있었고, 근검 절
약하여 착실하게 살아오며 현실적이고 현신적인 사랑을 주고 받았습니다.
따라서 학창시절부터 정치운동이나 사회운동에 큰 흥미가 없어 이런 운동
에 참여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1964년 8월 초에 본인이 중앙정보부
에서 2일간 조사를 받고 나왔을 때도 인혁당이란 이야기는 들은 적이 없
고 그뒤 신문지상에서 인혁당은 사실무근이라는 것을 보았을 뿐입니다. 본
상고인은 결코 공산주의자가 아닙니다. 물론 인혁당원이란 알지도 못하는
것이며 그 재건을 획책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수병으로부터 공산주
의 교양이나 지령 지시를 받은 일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를 공산주의자로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저에게는 이수병은 오랜 친구요, 양심적인 민주주의 신봉자일 뿐입니다. 더구나 공산 폭력을 음모 획책하거나 현정부를 타도 전복하여 정권탈취를 기도한 사실이 없습니다. 우선 정부를 타도 정권을 탈취할 능력이 없습니다. 설사 누가 정권을 맡으라고 준대도 그것을 유지할 능력이 없습니다. 본인의 정치적 견해를 피력한다면 자유와 사회보장이 철저히 실현되는 이상적인 민주주의 사회 건설을 염원하며 그러한 사회는 폭력혁명이나 폭압적 통치를 통해서가 아니라 민주주의 방식에 의한 평화적 정권교체를 통하여 점진적 개선이 이루어질 때 가능한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기록하기 위한 구체안은 없고 부정과 불의를 미워하며 정의를 사랑하고 바르고 청렴하게 살아가는 것을 본인의 생활신조로 하고 있습니다.

본인에 대한 중앙정보부에서 꾸며진 조서나 진술서는 전부 심한 몽둥이질과 전기고문 물고문을 통해서 꾸며진 것이며 무제한의 취조기간을 통하여 체력의 한계점에 이르렀을 때 취조관이 부르는 대로 받아 적거나 폭력으로 무인을 찍게 한 결과 만들어진 것이지 결코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꾸며진 것이 아닙니다. 제1차 검찰 취조를 받기 전날 중앙정보부에서 종합진술서를 수사관들이 꾸민 원본대로 베껴 쓰라고 하길래 부인을 하고 거부를 했더니 마구 몽둥이질을 해서 왼쪽 눈썹 위가 찢어져 피가 줄줄 흘렀습니다. 이때 한 사람은 “왜 외부 상처를 내느냐?” 고 책망을 하는데 대하여 다른 취조관들은 “외상이 나면 어때? 그 까짓 것 아무 일 없다” 는 말을 하며 안하무인격으로 “재판은 우리가 하는데 무슨 상관이야?” 라고도 말했습니다. 재판 같은 것은 전혀 개의치 않는 태도였습니다. 이것은 외상이 난 조그마한 하나의 예에 불과합니다. 그 다음 다시 “검사에게 가거든 시인해라. 죽고 싶거든 부인해라. 순순히 시인해야 살아날 수가 있다” 고 했습니다. 그 다음날 전신을 쏘시는 고통과 의자에 앉아 있을 체력도 없는 가운데 검찰 취조가 시작되어 정보부에서 꾸민 조서대로 검찰조서가 5월 18일경 꾸며졌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정보부에서 꾸민 3인조 조직 내용이 불합리하다고하여 검찰조서에서 검찰 의견대로 고치고 그 다음 정보부에 가서 검찰조서에 맞추어서 다시 삼인조 내용을 강요에 따라 진술서에 썼습니다. 그리고 유진곤으로부터 돈 받은 날짜를 전부 바꾸어야 되겠다고 강요해서 그대로 조서와 진술서를 바꾸어 쓰고(고쳐쓰고) 이렇게 쓴 것이 6월 초인데 진술 날짜를 5월 25일로 썼습니다. 그동안 취조과정에서 한번도 나온 일이 없는 ‘인혁당 서울지부’란 이름이 마지막 총정리 진술서를 수

사관들의 원안대로 강요에 의해서 억지로 쓸 때 나와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미 체력은 소진되었고 살아 있다는 실감이 없을 때여서 결국 그대로 쓰고 강요에 따라 무인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6월 10일경이었고 그 다음날 중앙정보부 3층 어느 방에서 검찰취조가 있었습니다. 검사가 본 상고인이 쓴 진술서를 가리키며 “이 내용은 모두 사실인가?” 라고 질문하길래 “사실이 아닙니다” 라고 대답했더니 “그러면 사실대로 조서를 다시 꾸며 오라” 면서 정보부수사관에게 전화를 걸려고 해서 “그대로 조서를 꾸며 주십시오” 라고 본 피고인이 말하여 정보부의 조서와 진술서대로 검찰 조서를 꾸몄습니다. 그때 저는 사실상 체력이 완전히 소진되어 정보부의 그 무서운 고문을 다시 받을 것을 생각하니 죽는 것이 차라리 낫다는 생각이 들어 정보부조서와 진술서대로 검취를 받고 말았습니다. 그때 저는 어떻게 되든간에 취조가 빨리 끝나기를 바라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그것만이 우선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리고 특기하고 싶은 것은 제2차 검취 때 다시 3인조 조직내용이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공소장 내용으로 확정되었고 이 내용은 처음의 조작된 3인조 조직 내용으로 환원되면서 더 보강된 것입니다. 제1심 재판에서의 심리는 위협과 협박 공갈과 날치기가 혼합된 검사의 독주 속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요구는 완전히 묵살된 채 진행되었고 그 결과를 보고 아연실색했습니다. 피고인들이 전혀 말한 일도 없고 공소장에도 없는 내용이 마치 있는 것처럼 꾸며져 법무사에게 질문하는 일조차 있었습니다. 저는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해서 충분한 심리도 없이 그런 판결을 내리는지 도무지 승복할 수가 없어서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제1심 이상으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요구가 묵살된 채 심리도 변변히 없이 일방적으로 기각 결정이 내리고 말았습니다. 본 상고인은 제1심, 제2심의 판결문을 얻어볼 수가 없어서 부득이 공소장의 순서에 따라 공소 내용에 대하여 사실 여부를 진술하고 상고 이유서를 대신하려고 합니다. 그전에 한가지 더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제1심 재판 중 즉 인정심문이 끝나고 사실심리에 들어가기 전날 중앙정보부에 다시 끌려가서 “시인해라, 재판은 우리가 하는 것이다. 판사도 다 우리 편이다. 부인하면 재판이고 뭐고 할 것 없이 처치해 버리겠다” 는 협박을 받고 심리에 임했던 사실이며 검사는 변변히 피고인의 진술도 듣지 않고 심리를 끝냈으며 판결은 검찰측 주장만을 듣고 했다는 점입니다.

그럼 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 김일성의 조선노동당 제5차 당대회에서 행한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보고문이 수록된 노트를 이수병으로부터 받은 일이 없으며 본 일도 없습니다. 공소장에 기재된 보고문 내용은 수사관이 불러준대로 쓴 것입니다.

2. 공소 제2항도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모두 친구 이외의 아무 관계도 아닙니다.

3. 공소 제3항도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4. 공소 제4항도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5. 공소 제5항도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김중대 유진곤은 이수병의 소개로 알게되어 친하게 지내는 친구이고 황현승, 이창복은 문리대 동창이며, 황현승은 직장(오산고교, 명성여고)을 통해 더욱 친밀해진 사이이며 이창복은 김중대에게 소개 받아보니 이미 아는 사람이라 친하게 지내게 된 것입니다. 5인이 회합한 사실도 없고 3인조를 꾸민 일이 없습니다. 서로 모여서 의논해서 조를 편성하여 서로 소속된 조를 알고 또 이중으로 조에 속하게 되고 언제 만나게 될지도 모르는 박중기(당시 구속중), 김달수를 조에 넣어서 유진곤을 떼어 놓는 등 상식으로 전혀 납득이 안되는 비밀 조직을 어떻게 꾸미겠습니까? 상호간에 알고 있는 비밀조직이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이점이 납득이 안되어 검사께서 자기(검사)의견대로 뜯어고쳐서 조서를 꾸미다가 나중 정보부의 원안대로 다시 바꾼것입니다.

6. 공소 제6항도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7. 공소 제7항도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8. 공소 제8항은 사실과 다릅니다. 본 상고인은 여정남을 단순히 이수병으로부터 소개받고 알게 되었고 일어 공부를 해서 취직하러 서울 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며 사귀어 보니 그 성격이 깨끗하고 분명하며 사나이다운 기상이 있어 껍 호감이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떠한 교양도 한 일이 없고 이수병으로부터 어떤 지령도 받은 일 없습니다.

9. 공소 제9항도 사실이 아닙니다.

여정남과 본인은 정부의 지나친 독재성과 학원 및 언론의 자유가 억압되어 있고 유류파동이 전 세계적 현상이라하나 정부의 경제 정책의 실패로 오늘날 극심한 경제난 물가고를 초래했다. 이것은 시정되어야 하고 관계자는 엄중히 책임을 져야한다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누구나 할 수 있는 비판한 것 뿐입니다.

사상 이념의 검토나 결과 보고는 조작입니다.

10. 공소 제10항도 허위 날조입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김한덕과는 안면이 조금 있을 뿐입니다. 김한덕과는 아무 논의도 없었

고 만나지도 않았습니니다.

11. 공소 제11항은 사실이 아닙니다. 음력 설 때 술이나 한잔하자고 청했으나 각자 사정이 달라 5인이 함께 만나지 못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만나서 치솟는 물가 부동산 매매 신문의 무기력 등에 관해 이야기했을 뿐입니다.

12. 공소 제12항도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단지 정부비판과 정의와 자유에 입각한 의사 표시의 필요성을 여정남이 이야기한데 대해 본인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원칙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긴 하나 지나친 주장은 삼가야 하지 않겠는가? 하고 동의하지 않은 일이 있었는데 이것은 저의 소극적 성격과 정치적 견해에서 온 것입니다.

13. 공소 제13항도 사실과 다릅니다. 경심 주점에서 술을 한잔하면서 학생데모는 학생의 희생만 초래했지,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빨리 취직 운동이나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고 한일 밖에 없으며 경북대학 유인물에 대해서는 모르는 일이고 그 내용은 수사관이 불러준 것입니다. 이수병에게 보고 같은 것 한 일 없습니다.

14. 공소 제14항도 사실이 아닙니다.

15. 공소 제15항도 사실이 아닙니다.

1974. 3말경 광화문 소재 초원다방에서 여정남과 만나 생활비와 취직에 필요한 돈 10만원만 빌려주면 곧 집에서 갖다가 갚아주겠다고 하기에 본인은 처의 치아 치료비로 유진곤으로부터 빌린 돈 5만원을 -집에서 방을 빌려준 전세금이 4월초에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되어- 다음 날 같은 장소에서 우선 빌려주고 2-3일 후 전셋돈이 나오면 더 빌려 줄테니 취직이나 잘되어 빨리 갚으라고 한 일이 있을 뿐입니다.

16. 공소 제16항도 사실이 아닙니다.

전세금 중에서 3만원을 빌려주고 빨리 갚으라고 당부하고 헤어졌을 뿐입니다. 4. 3일 데모한다는 이야기 등은 들은 일도 데모 자금을 준 일도 없습니다. 그리고 공소장에 의하면 도합 19만원을 3월말에서 4월초 사이에 데모 자금조로 유진곤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검찰조서, 정보부조서) 이것은 정보부에서 취조 시 완전히 수사관 마음대로 바꾸어서 조작한 것이고 사실은 유진곤으로부터 74년 1월 말경, 2월 중순경 각각 5만원씩 합계 10만원을 가옥을 수리하기 위하여 빌려서 가옥수리에 썼고 동년 3월 초순경 4만원, 3월 말경 5만원 합계 9만원을 처의 치아 치료비로 빌렸습니다.

17. 공소 제17항은 사실과 다릅니다. 4월3일 밤 T.V. 방송으로 긴급조

4호 발표를 알았으나 아직 이때까지는 당국에 고지할 것이 있다고는 생각 못했고 여정남이 민청학련에 가담한 줄도 몰랐습니다.

18. 공소 제18항 중 여정남으로부터 민청학련의 유인물을 받은 것만 사실입니다. 학생들의 주장이니 읽어보라고 해서 받았을 때 가슴이 뜨끔하고 놀랐습니다. 한편 호기심이 난 것도 사실입니다. 이때 인간적인 의리와 호기심 때문에 당국에 고지하지 못한 것을 지금 후회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습니다. 돈은 준 일이 없습니다.

19. 공소 제19항에서 퇴근시에 삼락학원에 가서 민청학련의 유인물을 이수병에게 준 일은 있으나 보고 같은 것은 한 일이 없습니다. 단지 친한 친구에게 이런 것을 보여줬을 뿐입니다.

20. 공소 제20, 21항에서 황현승에게 민청학련의 유인물을 한번 보라고 주었고 이창복에게는 따로이 1부를 갖다 주었습니다. 호기심으로 해서 이것을 남게 보여줬는데 당국에 고지 못한 것을 현재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21. 공소 제22항은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여정남이 생활비가 부족해서 돈을 빌려 달라고 해서 생활비를 빌려 줬을 뿐이지 주동학생에 대한 이야기는 들은 일이 없고 빨리 취직해서 생활 안정을 기하라고 한 것 뿐입니다.

22. 공소 제23항도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이수병의 생일 축하로 술을 취토록 마셨을 뿐입니다. 저희들이 술을 먹은 치술령은 그런 의논을 할 수 있는 곳이 못됩니다. 아무 의논도 없었습니다.

◆ ◆ ◆
공소장 작성 날짜는 1974년 5월 27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그 내용대로 검찰 취조를 받은 것은 6월 11일이나 10일로 알고 있습니다.

◆ ◆ ◆
대법원 판사 여러 어른들께서 깊이 통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생의 길을 열어 주신다면 민주시민으로서 착실하게 처자와 함께 살아 가겠습니다. 끝

1974. 12.

위 무인은 본인의 무인임을 증명함

상고인 김용원

입회교도보 양창수

상 고 이 유 서

피고(상고인) : 이 수 병

피고(상고인) : 김 용 원

상 피고인 등에 대한 대통령긴급조치위반 등 상고사실에 있어서 피고(상고인) 이수병, 김용원 등은 상고이유서를 아래와 같이 진술 함

一. 본건에 있어서 記審의 사실심리에 의하면 인민혁명당재건위원회나 민청학련이 복괴와 접촉되었다거나 그 지령을 받아서 활동했다는 사실은 없다. 그렇다면 인민혁명당재건위나 민청학련이 반정부 활동을 할려고 하였던 사실이 있다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나 반국가활동을 하려고 했다고는 볼 수 없다. 1심의 사실심리 과정에서 검찰관은 인민혁명당재건위는 복괴의 지령을 라디오로 받았다고 말하였으나 인민혁명당재건위의 지도위원이었던 상 피고인 서도원, 동 도예중 등은 복괴의 지령을 받거나 그 외의 방법으로도 접촉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또 원심에서도 복괴와의 관계에 있어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된 바는 없음

二.

1. 상 피고인 등에 대한 원심 판결의 이유에 해당하는 증거를 보면 상 피고인 이수병에 대하여는 '트랜지스터 라디오' 하나, 그 '레시바' 하나 일본서적 2권 및 검찰관 작성의 진술조서, 본인 작성의 진술서, 사법경찰관 작성의 진술조서 등이고 피고 김용원에 대하여는 검찰관 작성의 진술조서, 본인 작성의 진술서, 사법경찰관 작성의 진술조서 등이 있는데 '트랜지스터 라디오', 그 '레시바', 일본서적 2권 등이 본건에 있어서 참고는 될 수 있을 것이나 유죄 판결의 증거는 될 수 없고, 위 진술조서

등도 피고인 등이 서명날인은 했으니 피고인 등 및 그 외 상 피고인 등이 원심법정에서의 진술로 보아 고문해서 작성한 것으로 진술의 임의성이 없어서 증거가 될 수 없는데 이를 유죄의 증거로 1심이나 원심이 채택함은 그 판결이 잘못된 것임

2. 1심에서 유죄판결의 증거로 채택을 함에 있어서는 1심 공판조서에 의하여 상피고인의 법정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전부 또는 일부 진술을 증거로 하였다고는 하였으나 피고인 등이 1심 공판조서 등의 내용은 법정에서 진술 사실과 상이한 차이가 있어 이는 심히 유감이며 이를 원심이 그대로 증거로 채택함은 또한 유감이고 또 1심에서나 원심에서 본건 인민혁명당재건위와 민청학련과의 연관관계에 있어서의 절대적인 관계가 있고 상피고인등의 공소사실과 같은 관계가 있는 다른 건의 상피고인 여정남을 증인으로 1심에서는 여러 변호인이 신청을 하였는데 검찰관이 이 채택에 동의까지 했는데도 이를 1심이 채택 안 하고 원심에서도 채택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상피고인 등에 대한 사실심리도 전연 하지 않아서 원심은 상피고인 등의 항소이유서 진술과 변론만으로 결심, 1심 판결대로의 선고를 하였는데 1심은 물론 항소심에서마저 일체의 증거신청을 채택치않고 결심을 선고했는데 이러한 재판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원심은 위와 같이 채증법 상의 원칙을 위반하였음

三. 1심이나 원심판결 이유를 보면 공소사실에 대한 많은 사실에 대하여 오인하고 있음

1. 피고인 이수병의 공소사실을 보면 공소사실 35 중 다방에서 회합, 모의 등을 했다는 것이 공소사실 1, 2, 7, 8, 9, 10, 11, 13, 14, 17, 18, 19, 21, 22, 23, 26, 27, 28, 29, 31, 33 등 21개 사실이나 되고 그 중 야자수 다방 한곳에서만 회합 등 한 것이 11개 사실이나 되고 피고 김용원에 대하여도 공소사실 23개 중 다방에서의 사실이 상당수가 있는데 이는 우리의 오늘의 현실과 너무 상이한 사실이다. 다방에서 연락, 접촉 등을 할 수 있으나 반국가단체 구성을 위한 회합이나 그에 관련되는 모의를 할 수 없으며 또 대통령긴급조치를 비방하는 행위, 복귀를 찬양 고무 동조하는 행위 등도 이런 곳에서는 안 하는 것이 현실임.

2. 상 피고인 이수병의 공소사실 중 그 1에 있어서는 공소 외 변무감으로부터의 170만원의 수령이나 공소사실 29에 있어서의 19만원의 수령 및 피고 김용원의 여정남과 관계되는 공소사실 15, 16, 18 관계 금액

등이 반국가단체 구성을 위한 자금으로 내란 선동을 위한 거사자금으로 전용된 듯이 기소 또는 판단하고 있으나 1심 법정에 있어서의 관계, 상 피고인 등의 진술서로 보아 그런 것이 아니고 집을 처리했다든지 생활비로 썼다든지 부인의 치료비로 전용된 것이 사실임

四. 원심판결은 피고인 등에게 유죄 판결을 할 수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사형구형에 사형선고에 그대로의 확인은 그 양형이 지나치게 부당하다. 피고인 등이 대통령긴급조치 위반 1, 4호 위반, 형법위반, 반공법,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되어 있지만은 그 어떤 행위에 착수를 하거나 또는 어떤 행위를 한 것은 아니고 공소사실 그대로 하더라도 단지 예비음모 단계에 있다는 것에 불과한데 사형의 선고는 유죄판결을 할 수 있다고 가정해도 이는 지나치게 그 양형이 부당함

五. 본건 형사사건은 단순한 형사사건이 아니고 정치적 형사사건이라고 국내외에서 보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미□일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외 세계각국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본건 심리에 예의 주시하고 있고 우리 국민 모두가 큰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고 또 미국 국회에서 한□일 간의 여러 회합에서 또는 유엔의 지원을 받고 있는 국제사면위원회 등에서 논의되거나 관심을 가지고 주시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이러한 국□내외적 현실 하에서 전심(全審)은 최고 최종법원으로서 우리 국가의 권위를 위하여 국민이 납득될 수 있는 판결을 미□일 등 국제사회에 이해가 가는 판결 또는 심리가 바람직한 것임.

1974. 12. 13

피고(상고인) 이수병 김용원 등 변호인

변호사 조승각

대 법 원 귀 증

상고이유서

피고인 우 홍 선

본 적 경남 울주군 [redacted]
 주 소 서울 서대문구 [redacted]
 성 명 우 홍 선
 생년월일 1930. 3. 6.
 직 업 한국골드스탬프(주) 상무이사
 죄 명 대통령긴급조치 위반

상기 본인은 1974. 7. 11. 대통령긴급조치위반으로 비상보통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항소를 제기하였던 바 1974. 9. 7. 비상고등군법회의에서 항소기각하였으므로 이에 불복하고 상고이유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다 음

명철하신 재판장님, 판사님!

1. 본피고인에 관한 경찰관 작성의 조서 및 자필진술서와 심지어 검찰관 작성의 조서 및 진술서까지 중앙정보부의 지하실에서 혹독한 고문으로 강요되어 불가항력으로 끝내는 허위진술한 것으로서 사실과는 전혀 다른 것이옵니다. 본피고인의 자백은 전혀 임의성이 없는 것이오니 이점 특별히 살피 주시옵소서.
2. 본피고인은 북괴공산집단에 의한 큰 피해자 중의 한사람입니다. 6.25 남침으로 학업을 중단하고 화천 전방 일선 보병 소대장으로 전투 중 부상을 입고 생명은 구했습니다만 반불구자가 되고 출혈이 심하여 건강을 잃고

지금껏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불법남침한 북괴는 저의 원수이 온데 그 북괴를 고무 찬양하거나 이익이 되는 일을 본피고인이 할 의사와 이유가 있겠습니까? 살피주시옵소서

3. 4.19 이후 우연히 군동기의 소개로 혁신계와 가까히 하게 되어 인민혁명당 사건에 관계되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난 다음 오늘까지 정치적인 문제에 관계할 생각이 없었을 뿐 아니라 사찰당국에서 자주 시찰하기 때문에 말과 행동을 삼가고 근신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학생문제엔 저로서는 대학도 졸업하지 못한 사람으로 아무 연고자도 없는 문외한입니다. 이와 같은 처지에 있는 본피고인으로서 대통령긴급조치를 위반하거나 비방할 조건에 있지 못했습니다. 더더욱 반국가단체를 구성하여 국가를 변란한다는 것은 미친 사람이 아니고는 생각지도 못할 일이 였니다. 살피 주시옵소서.

4. 본 피고인에게는 노모와 처와 4남매의 자식이 있습니다. 가정을 부양하고 자식들을 교육시키며 안정된 생활기초 위에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자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불행하게도 저의 인민혁명당 전과 때문에 일부 수사관의 과잉충성으로 사건에 말려들었습니다.

현명하신 재판장님, 판사님! 죄없이 사형의 선고를 받고 운명 앞에 떨고 있는 본피고인을 저의 가정으로 돌려 보내주시어 어린것이 고아가 되는 것을 면하게 해주시옵고 건전한 가정을 꾸려 민주국가 건설에도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끝으로 하느님이 재판장님과 판사님께 용기와 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하옵니다.

1974. 12. 13

위 피고인 우 홍 선

위 무인을 증명함

입회교도보 남해열

상 고 이 유 서

피고인 우 흥 선

위 피고인에 대한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 등 피고사건에 관하여 위자의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상고 이유를 펴는 바입니다.

다 음

원심 판결은 지극히 형식적이고 실제적 진실발견을 외면한 재판의 냄새가 짙고 피고인이 고문과 억압에 의하여 부득이 수사관의 요구대로 만들어진 피의자 심문조서, 자술서 상 피고인의 피의자 심문조서등을 유죄의 증거로 하여 사형이란 극형을 선고한 것인 만큼 심리미진, 채증법칙을 위배한 것임으로 마땅히 파기되어야 할 것임을 믿는 바입니다.

본건의 발단은 소위 10년전에 화제를 모았던 「인혁당」 사건으로서 공안부장 검사가 상부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검사의 양심상 상부의 지시대로 공소제기 할수없다 하여 조목을 끈 사건으로서 10년전의 그 악몽이 10년 후 민청학련 관련자로서 소위 인혁당 재건사건으로 등장하게 된 사실과 그 증거가 고문에서 만들어진 피고인들의 진술 등으로 유죄가 되었으니 원심에서 그 조서 등의 작성 경위 등을 잘 살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안일 무사주의로 심리판단한 것이니 가혹한 형량과 함께 법관의 최대한의 양식을 발휘할 때라 믿는 바입니다.

1974. 12. 14
위자의 변호인
변호사 김 종 길

대 법 원 귀 중

보충상고이유서

피고인 우 흥 선

위자에 대한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 등 피고사건에 관하여 위자의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보충상고 이유를 펴는 바입니다.

다 음

피고인이 고문에 의하여 죽음보다 수사관의 의도대로 적당히 그 비위에 맞도록 멋대로 진술한 내용이란 것은 다음 첨부된 서울구치소 처방전에서 명백합니다. 즉 피고인이 상처로 인하여 하지를 쓸 수 없어 누워도 좋다는 와허증으로도 그 경위를 알수 있는 바 여사한 고문에 의한 진술을 증거로 삼을 수 없기에 원심판결은 파기되어야 할 것입니다.

(와허증에 대한 서울구치소처방전 첨부)

1974. 12. 16

위자의 변호인
변호사 김 종 길

대 법 원 귀 중

상 고 이 유 서

상고인 여 정 남
(서울구치소 재감중)

본 적 경북 대구시 [redacted]
주 소 경북 대구시 [redacted]
성 명 여 정 남
생년월일 1944년 5월 7일생
죄 명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등

상 고 요 지

상기명 피고인은 1974년 9월 7일 비상고등 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언도 받고 불복 상고 한 바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개진합니다.

상 고 내 용

1. 시종 일관 고문 공갈 협박으로 강제 조작 허위 진술된 제반 기록에 의한 영터리 공소사실과 위법재판 절차를 그대로 인정 항소기각 결정을 내린 비상 고등 군법회의의 2심 재판 역시 1심 재판과 마찬가지로 전면 무효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므로 본 상고 이유서에서는 본 피고인의 항소 이유서에서 열거한 사항들도 전부 포함하여 상고 이유로서 주장하는 바입니다. 소송기록에 첨부되어 있는 항소 이유서를 충분히 검토 하였을 줄로 사료하옵고 본상고 이유서에는 항소 이유서와 중복되는 내용은 기술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간단히 상고 이유를 밝히고자 합니다.

2. 재판을 개정하기 전일 변호인 접견시에 알 수 있었던 사실인 바 비상 고등 군법회의에 본피고인이 제출한 항소이유서의 열람을 변호인이 요청

했던 바 이유없이 이를 거절당한 경악할 사실이 있었습니다. 피고인의 인권을 옹호할 소송대리인이 항소 이유서도 보지 못하고 다시말하면 항소의 내용조차도 모르고 꼭두각시 놀음격으로 재판에 임해야만 했던 년센스는 대한민국에는 법이 존재치 않는 무정부 상태나 같다는 역설적인 표현과 하등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어려운 상황하에서도 본 피고인을 위해 열성껏 변호해 주시던 강신옥 변호사님이 1심 공판 도중 긴급조치 위반죄로 어처구니 없이 구속 기소되어 10년이란 중형을 받고 상고 중에 있는 법치국가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불행한 사태까지 생겼습니다. 이러한 점을 비추어 볼 때 이루 열거 할 수 없을 만치 많은 변론 봉쇄 내지 탄압책이 자행되었으리라 사료됩니다. 이러한 처사만 보아도 비단 변호인뿐만 아니라 1, 2심 재판부가 양심에 입각해서 자주적으로 소신껏 재판을 할수 없었음은 명백한 사실일 것입니다. 거역할 수 없는 무서운 절대 권력의 억압과 명령하에 일방적으로 행해진 형식적인 재판 절차와 판결을 전면 무효로 함이 마땅합니다.

3. 비상 보통 군법회의에서의 1심 재판이 소위 재판의 형식이나마 갖추려고 노력한 흔적이 엿보인다면 빈대도 낫작은 있다 는 옛속담과 같이 더 이상 부끄러워 재판을 계속 할 수 없었던지 아니면 소위 인혁당 사건, 민청학련 사건 등의 조작사실의 진상이 만천하에 또다시 공개되는 것이 두려워서 인지 피고인, 변호인들에게 진술할 일체의 기회를 박탈해 버렸습니다. 변호인이 신청한 증인 신청을 기각했음은 물론 보충 심문 조차도 허용치 않음은 군법회의법에 규정되어 있는 요식 행위 조차도 생략한 불법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4. 가령 조작된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는 있을 수 없는 불행한 판결을 내릴지라도 원심 판결은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므로 당연코 파기되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상기와 같이 본피고인의 상고 이유를 밝혔사오니 현명하신 판단아래 공정한 판결을 내려 주시기를 앙망합니다. 본피고인 뿐만 아니라 수많은 피고인들의 사적인 억울한 사정은 우선 차치하고라도 법의 존엄성을 밝히고 아울러 사법권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법치국가에서는 도저히 묵과 될 수 없는 본건을 철저히 규명하시와 파기 환송의 판결을 내리시어 1심재판

부터 공정한 법절차에 따라 재판이 새로이 재개될 줄로 기대 하오며 그길
만이 아니라 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소생시키는 시급성이 될 것입니다.

1974년 12월 12일

피고인 여 정 남 인

위 무인은 본인의 것임을 증명함

교도보 주 한 균 인

대법원 제1부 재판장 귀하

74도3323

1974. 12. 17

상 고 이 유 서

피고인 여정남 류근일
정상복 이수병 나상기
서경석 안재응 황인성

사건명 대통령 긴급조치위반
국가보안법위반
내란예비음모
내란선동
반공법위반

위 사람들에게 대한 대통령 긴급조치위반등 피고사건에 관하여 별첨
과 같이 상고이유를 밝힙니다.

1974년 12월 6일

위 피고인들의 변호인

변호사 한 승 현

위 피고인들의 변호인

변호사 한 승 현

원판결에는 다음 別記하는 바와같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위반, 법률위반, 법률오해 및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제 1 点 원판결이 적용한 대통령 긴급조치 제1호(1974. 1. 8) 동 제2호(同日자) 및 同제4호(同年 4. 3)는 헌법에 위반되는 조치로서 무효이며 이러한 무효인 조치를 적용하여 유죄의 판결을 한 원판결은 명백한 헌법위반이 아닐 수 없다.

1. 전시 대통령 긴급조치(이하 긴급조치 또는 조치라 약칭함)는 헌법 제53조가 정하는 선포요건이 존재치 않는 상태에서 발동되었으며 긴급조치로서 규제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난 것이다.

헌법 제52조 제1항에 보면 「대통령은 ①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 경제 상 위기에 처하거나 ②국가의 안전보호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가 중대한 위협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어 ③신속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 제한하여 긴급조치를 발표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그런데 위 긴급조치들이 과연 그 근거되는 헌법조항에 맞게 선포되었느냐를 따져보면

가. 긴급조치 제1호에 대하여

(1) 同 제1호 발표시에는 이른바 유신헌법의 개정을 주장하는 재야인사들이 개헌청원을 위한 서명운동을 시작하여 각계의 호응을 얻고는 있었으나 이러한 평화적 청원운동은 「국가의 안전보호와 공공의 안녕질서에 중대한 위협을 줄 우려」(74. 1. 8자 긴급조치때의 정부발표해설문)가 조금도 없는 행동이었다.

(2) 위와 같은 개헌청원서명운동은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청원권 행사의 일환이었다.

헌법 제2조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同조 제1항)고 되어있고 국가법 제4조가 정하는 청원사항에는 「법률 명령 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도 포함되어 있으며(3호) 다수인이 공동하여 청원하는 것이 당연히 허용되는 이상(同법 제6조 2항) 헌법개정청원을 위한 서명 및 그에 관련된 의사표시는 헌법상 당연한 국민 기본권행사의 하나임이 분명하다.

(3) 또한 현행법상에 대한 찬반 개폐의 의사표시는 그 내용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인하는 것이 아닌한 헌법 제18조가 정하는 언론출

판의 자유에 속할 뿐만 아니라 헌법 제8조 후반이 「국가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비추어 볼 때 전기한 헌법상의 국민의 제권리를 근본적으로 박탈하는 조치는 헌법위반이라고 아니 할 수 없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긴급조치 제1호는 헌법의 부정, 반대, 개정 폐지의 주장이나 청원을 전면적으로 금지 처벌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니 이것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청원권과 사상발표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 박탈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어긋나는 무효의 조치라 할 것이다.

(5) 국민의 평화적인 기본권행사는 그 자체로서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위협이 될 수는 없는 것이고 설령 그 행사 과정의 진전이나 여파에 의해서 공익에 「중대한 위협을 줄 우려」가 있다고 한정하더라도 법적인 조치는 그런 위협이 될만한 불법한 물리적 위력을 방지하는 한도에서 끝나는 것이어야지 아예 기본권의 평화적 행사까지를 곧 범죄시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위협요인의 제거가 현행법상의 제재법령만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할 경우에 한하여 긴급조치를 발동할 수 있는 것이며 그것은 헌법상의 대통령 긴급조치권이 국민 기본권보장과 권력 분립을 생명으로 하는 우리 헌법을 스스로 파괴할 위험을 내포한 예외적 이례적인 제도임에 비추어 그 행사요건과 한계는 엄격히 제한적으로 해석함이 옳기 때문이다.

(6) 따라서 가령, 개헌청원이나 반정부적 언동으로 인하여 시위가 일어나거나 사회질서에 혼란을 줄 염려가 있다 하더라도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등 현행법으로 다스릴 수 있었고, 극단의 경우에는 형법상의 소요죄나 내란죄로 대응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최악의 경우에 정부가 가장 우려하는 반국가적 색채를 띠게 된다 할지라도 국가보안법이나 반공법등으로 처벌할 길이 있는 것이다.

결국 개헌청원이 어떤 혼란을 가져온다고 가상하더라도 그로 인한 질서파괴 행위는 현행법으로 충분히 대응내지 처벌이 가능한 것이며 이처럼 현행법으로 못다스릴 질서파괴 행위는 하나도 없는데 새로운 조치를 발표하여 국민의 헌법적 권리행사를 범죄시하는 것은 헌법 제53조 1항의 긴급조치 발동요건을 무시한 처사였다고 아니할 수 없다.

(7) 헌법에 대한 반대나 개헌청원에 수반하여 소란이 온다고 보아서 개헌청원행위 자체를 범죄행위로 규정하는 것은 마치 아버지의 약값을

마련하고자 절도를 한 경우에 절도 행위만을 처벌하는데 그치지 않고
효도 그 자체를 일반적인 범죄로 보아 금지 처벌하는 것과 동일한
역설이라 할 것이다.

특히 긴급조치비방행위까지 처벌(제 5항)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점은
위와 같은 위헌적 조치발동을 그 조치 스스로가 자인하는 표현이라 할
것이다.

(8) 위 긴급조치 제1호는 법관의 영장 없는 체포, 구속, 압수 수색을
허용한 점에서도(제5항) 헌법에 위반된다.

헌법상 영장제도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헌법 제
54조 제33항에 의한 비상계엄 선포하에서만 허용되는 것이고 헌법 제
53조에 의거한 긴급조치로는 영장 없는 체포, 구속 등이 허용되지 않
음이 명백하다. 그것은 헌법 제54조가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
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에 반하여 헌법 제53조에는 그러한 명문이 없
는 점에서도 자명하다. 오직 「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자유와 권리를
잠정적으로 정지」하거나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긴급조
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인데 그런 내용의 조치는 헌법 제
54조에도 「……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되어있어 후자에 영장제
도에 관한 명문을 두는 것 외에는 양자가 동일한 내용임을 알 수 있
다.

그렇다면 전자의 조치로는 후자에만 명시된 영장제도에 관한 특칙을
신설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급조치
제1호가 영장 없는 체포 구금제도를 둔 것은 헌법 제53조를 위반한
내용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나. 긴급조치 제4호에 대하여

(1) 동 조치 또한 발동의 요건과 그럴만한 상황이 없이 취해진 점에
서 전시 조치 제1호의 경우와 흡사하다. 동 조치가 발포된 1974. 4.
3 경의 상황은 오래 전부터 유포되어온 학생 데모설이 항간에 나돌고
있었을 뿐이었고 만일 집단적인 시위가 벌어진다 하더라도 현행법 상
으로서 능히 대처할 수 있는 것임으로 새로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탈하는 긴급조치를 할 만한 불가피성은 없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동 조치는 헌법 제53조 제1, 2항의 요건에 맞지 않는 것이

어서 헌법상의 근거를 일탈한 조치로서 무효라 할 것이다.

(2) 또한 위 조치는 긴급조치로서 규제할 수 있는 한계를 무시한 금
지규정을 두고 있어 이 또한 헌법에 위반하고 있다.

즉,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과 이에 관련되는 제단체(이하 「민청학
련」이라고 약칭)를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등의 제행위를 금하고
(제7항) 그 단체 등의 표현물 배포 등을 금지시키는 것(제2항)은 정
부가 특정단체의 명칭을 명시하여 사법재판의 판결을 거치지 않은 채
그 특정단체를 일방적으로 범죄단체로 규정하였다는 점에서 국민기본
권에 속하는 결사의 자유와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위 “단체”가 범죄단체라는 것을 재판이전에 이미 전제를 삼고 조치가
나왔음으로) 위헌적 조치이다.

북한공산집단이나 그 솔하의 로동당 또는 조총련에 대해서도 그 명칭
을 지목하여 제재입법을 한 일은 없고 오직 국가보안법이나 반공법에
서 “반국가단체”라는 법문을 두고 그 개념의 해석과 나타난 사실을 통
하여 범죄단체시하여 온 것임을 상기한다면 민청학련을 특정하여 정부
가 일방적으로 범죄단체시한 위 긴급조치는 어느 모로 보나 헌법 부정
의 조치라 하겠다.

(3) 그리고 가령 민청학련이 범죄집단 내지 반국가단체라는 정부의
일방적 예단에 잘못이 없다고 하면 전시한 국가보안법이나 반공법 그
리고 형법 중 범죄단체조직죄(제114조) 등 현행법으로 다스려도 충분
한 것이며 따라서 새로운 긴급조치의 필요는 전혀 없는 상태에서 위
조치가 발포되었으니 이 점에서도 위헌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혹시 학생들에 의한 데모나 폭력사태를 예상하였다 해도 그에 대처할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과 형법 등이 현행법으로서 엄존하는 이상 결론
은 동일하게 귀착되는 것이다.

(4) 더욱이 동 조치 제4호는 그 발표이전의 행위를 사후에 범죄시하
여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점에서 헌법상의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위반된다.

(가) 위 조치 제4호는 1974. 4. 3. 22시부터 시행한다고 하여 (제
12항) 언뜻보아 시행일자 상으로는 소급효를 피한 듯이 보이지만
그 조치 선포전에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금한 행위를 한 자는
1974. 4. 8 까지 그 행위내용의 전부를 수사 정보기관에 출석하여
숨김없이 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4항) 나
가 이에 위반한 자는 사형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함으로서(제8항) 현실적인 소급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나) 일정의 시행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의 행위는 범죄가 아니라고 인정하면서 시행일 이후에 정보 수사기관에 출석, 그것을 고지할 의무를 강요하고 이에 위반하는 부작위를 처벌하는 것은 결국 조치시행 이전의 행위를 사후에 처벌시키는 것과 동일한 내용으로서 소급입법의 제한과 형벌불소급의 대원칙을 선명한 헌법 제 11조에 저촉되는 것임이 분명하다.

(다)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가 되는 행위에 대해서도 자수의 의무는 없는 터이고 <형법상 자수는 형의 감면사유일 뿐임> 하물며 자수불이행을 독립된 범죄로 보는 형사입법은 존재할 수 없는 것인데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정당시되는 일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 출석 고지의무를 지우고 (이는 자수의무와 다를 바가 없다) 고지 의무 위반을 독립된 범죄로 보아 처벌하는 위 조치 제4항은 그 시행 이전의 행위를 범죄로 보고 있다는 논리와 전제에서 나온 규정이라 아니 볼 수 없다.

(라) 특히 동 4항에서 「위 기간 내에 출석 고지한 행위에 대하여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하는 규정을 새삼스럽게 둔 것은 「조치시행 이전의 행위라도 기간 내에 고지를 하지 않은 것은 범죄로 본다」는 취지가 문득 노정된 것으로서 동 조치의 소급처벌성을 자인한 단면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동 조치에 엿보이는 조문 표현상의 기교나 위장성을 가지고 헌법상의 형벌불소급의 원칙을 왜곡시키려는 해석태도는 용인될 수 없는 것이다.

(5)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구금 등 강제처분을 할 수 있다는 규정(제9항)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도 동 조치가 위헌무효임을 앞서 조치 제 1호에 대한 부분에서 살핀 바와 같다.

이처럼 본건에서 적용된 긴급조치는 그 발동요건의 부재성과 규제조항의 내용면에서 위헌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원심은 본건 피고인들에 대한 심판에서 그 위헌임을 밝히는 절차를 밟아 그 적용을 거부 배제하였어야 할 것인데 그러지 않고 무효인 조치를 그대로 적용한 위법을 범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2. 물론 헌법 제53조 제4항에는 「제1항과 제2항의 긴급조치는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하는 규정이 있으나 구태여 그런 규정을

따로 둔 본의가 긴급조치로서 헌법을 무시 유린해도 좋다는 절대권을 대통령에게 주자는 데 있다면 이는 절대적 헌법(Absolute Verfassung)에 어긋나는 상대적 헌법(Relatives Verfassungsgesetz)로서 무효라 할 것이고 반대로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국회의 정상입법절차를 거친 법률도 위헌심사의 대상이 되는 것과 비교해 보거나, 전쟁 또는 전쟁에 준할 사변에 있어서 적의 포위공격으로 인하여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된 지역에 선포하는 비상계엄(헌법 제54조, 계엄법 제4조)의 선포에 즈음한 특별조치도 동법 심사대상에서 예외 되지 않는 점(헌법 제54조 제3항)과 대비하여 볼 때에 그 결론을 달리할 수 없는 것이니 역시 보다 높은 절대적 헌법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위헌 여부의 심사를 헌법위원회에 제청하였어야 마땅하다고 보는 것이다.

제 2 点 원판결은 또한 긴급조치 제1호와 동 제4호의 해제로 인하여 처벌할 수 없는 행위를 유죄로 판결한 헌법 및 법률위반을 범하였다.

1. 전시한 긴급조치 제1호와 동 제4호는 1974. 8. 23.자로 해제되었으니(긴급조치 제5호) 이는 형법 제1조 2항 소정의 「범죄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범죄후의 법령 개폐로 형이 금지되었을 때」에 해당됨으로 군법회의법 제371조 제4호에 의하여 마땅히 면소의 선고를 하였어야 옳다.

2. 물론 위 긴급조치 제5호 2항에는 「해제 당시 대통령 긴급조치 제1호 또는 동 제4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그 사건이 재판 계류 중에 있거나 처벌을 받은 자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미 공판에 계류중인 사건에는 위 해제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는 조항을 두고 있으나 이러한 경과규정은 헌법 제53조 제5항에 위반되는 것으로 효력이 없는 것이다. 헌법 제53조 제5항에는 「긴급조치의 요인이 소멸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만 되어 있음으로 그 해제에는 어떠한 유보나 단서도 붙일 수가 없는 것이다. 일반 법률에서의 이른바 경과규정은 그 설정자체가 정상적 입법권의 행사인 점에서 대통령의 비상적 변칙조치인 긴급조치와 동일하게 말할 예증이 되지 못한다.

3. 그렇다면 위의 경과규정은 위헌이라 할 것이고 헌법 제53조 제4항의 동법 제1항과 제2항의 긴급조치만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으니(설령 그런 조항이 유효하다고 할지라도) 동 제5항에 의한 대통령의 해제조치(특히 그중 경과조항)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 것임이

명백하고, 따라서 원심은 그 위헌여부의 심사를 헌법위원회에 제청하여 그 판단을 받아 재판할 하였어야 마땅했을 것이다.

제 3 点 원심은 법적요건을 갖춘 결정도 없이 비공개재판을 강행함으로써 공개재판을 받을 피고인의 권리를 보장한 헌법 제24조를 위반하였으며 비공개결정이 없는 한 공개재판을 해야 한다고 한 군법회의법 제67조에 위반하였다.

1. 원심에서는 시종 공판기일마다 피고인 1인에 직계가족 1인씩의 법정방청만이 허용되었고 그와의 사람은 영문에서 출입증교부를 거부하는 방법을 써가지고 재판장소의 근처에도 접근치 못하게 하였다. 많은 피고인을 좁은 법정에 들여 앉히고 재판하느라고 방청석이 협소했다는 구실이 나올지도 모르나 1, 2명의 피고인을 재판할 때도 방청금지도 동일하였으며 다수의 피고인을 입정시켰을 때에도 방청석에는 빈자리가 많이 남아 있었고 혹은 정보, 수사, 재판을 담당한 기관원들에 의하여 자리가 메꾸어져 있었다. 피고인의 어머니가 방청을 한다고 해서 아버지나 형제조차도 방청이 금지된 그러한 재판은 결코 공개재판이 아니다.

2. 무릇 공개재판이란 방청을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장소의 형편이 허용하는 한도로나마 모두 방청을 가능케 하는 기회를 개방함으로써 국민으로 하여금 재판의 공정을 감시 담보케하려는 제도임이 분명하다면 피고인당 방청인 1명이라는 엄격한 허가제(?)를 풀지 않은 채 방청인이 앉아야 할 자리에 각계의 기관원이 앉아서 진술의 메모와 감시의 인상을 주는 표정으로 일관한 원심의 법정상황은 국민의 재판감시 역할을 봉쇄하였다는 점에서 공개재판이었다고 볼 여지가 없는 것이다. (심지어 국방부 출입기자도 취재메모나 방청후의 보도가 금지된 채 군법회의대변인의 발표문을 그대로 받아가는 실정이었다)

더구나 원심은 그와 같은 방청금지를 위한 적법한 비공개결정을 한 바도 없다.

3. 위와 같은 제사실에 비추어 설령 원심공판조서에 공개로 재판이 진행되었다는 취지의 상용문구가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의 허위기재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비공개재판이었던 위법한 원심재판절차의 과오를 치유시킬 수는 없다. 설사 방청의 일반적 금지조치가 원심 심판부의 제지가 아니었다고 해도 심판부와 “한집안” 처럼 밀착되어 업무를 수행해온 관계부처(군법회의내의 각과)의 공무원에 의해서 이루어진 조치인 이상,

그리고 그러한 방청금지 조치를 심판부가 알면서 묵인한 이상 「적법한 결정없는 비공개재판」이라는 위법에는 아무런 소장(消長)이 없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한 재판은 원심기록을 통해서는 밝혀질 수 없는 것임으로 군법회의법 제435조에 의하여 원심변호인들의 진술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어 별도로 이를 신청하겠음)

제 4 点 원재판은 고문,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강요된 자백을 임의성있는 자백이라고 보아 유죄의 증거로 삼았다는 점에서 헌법 제10조 2항, 군법회의법 제361조(제1항과 제2항)에 위반하였다.

1. 검찰관작성의 각 피고인들에 대한 피의자심문조서, 진술조서, 자필진술서 등은 피고인들이 비상보통군사회의 검찰부에 송치되기 전 사법검찰관서의 조사를 받음에 즈음하여 심한 고문을 당했거나 위계에 넘어가서 사실이나 본의아닌 진술을 강요당하였고 검찰관의 조사단계에서도 그러한 공포와 불안의 분위기가 계속 되었는데다가 구타, 송치기관원의 입회 등의 방법으로 자유로운 진술을 하지 못하였으며 일방적인 조서작성, 불러주는 대로의 자필진술서작성등의 수법에 의한 것으로 피고인들은 제1번 법정에서부터 이에 관한 이의와 호소를 제기한바 있었다.

2. 이와 같이 피고인(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이 임의도 된 것이 아닌 것은 증거할 수 없음이 명백한데 (군법회의법 제361조 제1항) 제1항은 별반의 임의성입증도 없는 채로 위와 같은 진술을 내용으로 한 조서나 서류를 유죄의 증거로 하였고 원심 또한 이를 지지하였다.

3. 원심은 그 판결에서 「검찰관 작성의 각 피고인들에 대한 피의자심문조서와 진술조서 및 자필진술서 …… 등에 관하여 보건대 일건 기록을 아무리 정사하여 보아도 위 조서 등이 강요에 의하여 임의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만한 아무런 자료도 찾아볼 수 없고……」라고 판시 하였다. (판결문 42면 상단)

이러한 실시에서 원판결의 위법한 과오는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첫째, 강요에 의한 임의성 없는 진술이었던가의 여부를 일건 기록의 정사만 가지고 판단하였다는 것은 넌센스에 속한다. 조서상에는 오히려 임의로 진술하였다는 것을 표시하는 부동문자가 인쇄되어 있음이 상례이고 자기 앞에서의 진술이 강요에 의한 진술이라거나 자기가 진술을 강요했다는 점을 조서에 기재해 놓을 작성자(또는 심문자)는 천하에 전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 정말로 일건 기록을 정사했다면 제1심 공판조서 기재내용 가운데서 피고인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임의성이 없는 것이라고 의심할만한 자료(피고인들의 진술 등)를 충분히 발견하였을 터인데 이 점을 간과한 것은 큰 잘못이었다.

셋째,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그 진술이 특히 신뢰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피고인의 법정진술에 불구하고 증거로 할 수 있는 것인데(군법회의법 제356조) 적어도 피고인들의 진술이 고문과 강요에 의한 진술이었다고 각 진술자(피고인) 자신이 억울함을 개진하였고 기소전과 그 후의 법정진술이 전면적으로 상치되어 있음을 아울러 看取하였다면 기소전에 작성된 조서상에 담긴 피고인들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것이 아님을 알았을 것이고 만일 불확실했다 하면 그 점에 관한 심리를 좀더 자세히 하여 진상을 밝혔어야 했다.

넷째, 본건 제1심에서 변호인은 위 각 조서에 대한 의견진술을 통하여 각 피고인의 진술의 임의성을 부인하였는데 이런 경우 소추자인 검찰관측이 그 진술의 임의성을 입증하지도 않았으니 그런 진술을 내용으로 한 위 각 조서 등은 군법회의법 제361조 제2항의 해석상 증거능력이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유죄의 증거로 채용하였으니 그와 같은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지지한 원심은 진술의 임의성과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검찰관에 대한 「임의성입증」의 촉구조차 안했다는 점에서 심리미진의 위법을 범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4. 무릇 헌법 제10조 제2항이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소이는 고문이나 진술강요 등을 금지시킨다는 뜻과 아울러 그러한 위법행위의 결과로 얻어진 진술에는 아무런 효력도 부여해서는 안된다는 뜻을 선명한 것임으로 이에 어긋나는 판단을 보인 원심판결은 헌법위반의 허물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제 5 点 원판결은 군법회의 제204조를 위반하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증인신문 참여권을 박탈한 제1심의 위법을 간과한 위법이 있다.

1. 이 점에 관하여 판결문은 「원심 공판조서를 정사하여 보니 원심 수명법무사 행한 증인 신문기일에 피고인이 참석치 아니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러나 원심은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이 참석한 1974. 7. 2 제14차

공판기일에서 “1974. 7. 5. 13:00와 1974. 7. 6. 10:00 비상보통군법회의 법무사실에서 수명법무사가 증인신문을 행할 것”을 고지하고 각 관계인의 출석을 명하여 죄법하게 기일통지를 하였음을 볼 수 있고…… 비록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참석치 아니하였다 하여 그 증인신문절차가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고……」(판결문 44면)라고 실시하면서 변호인들의 항소이유를 패소하였다.

2. 그러나 제1심 당시의 1974. 7. 2. 공판기일에서 재판장은 증인신문기일에 피고인들의 출석을 명하거나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다는 취지를 알린 바가 없으며 구속피고인의 출정을 가능케 하는 소환이나 그에 준하는 조치를 하나도 취한 바도 없다.

만일 원심기록에 증인신문기일에 피고인들을 소환한 흔적이 남아있다면 그것은 원심변호인들의 강력한 항의가 있는 뒤 사후에 꾸며진 문서임이 틀림 없으니 (수많은 피고인중 한사람도 증인신문기일에 심문장소에 “인출”된 사람이 없었을 뿐 아니라 그 다음의 공판기일에 피고인들이 이에 항의한 점에서 그 진상을 숙지할 수 있다) 이로서 증인신문 참여권의 박탈을 첨부할 자료로 삼아서는 안된다.

3.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 증인신문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미리 명시한 일도 없었으니 제1심 재판부로서는 군법회의법 제20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피고인들에게 미리 하였어야 함은 물론이고 특히 구속수감중인 피고인들로 하여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는 출정지시가 따랐어야 할터인데 실제로는 그러한 조치가 없었으니 이는 결국 同조 제1항이 정하는 피고인의 증인신문 참여권을 의도적으로 봉쇄한 것으로 위법이라 할 것이다.

4. 그러나 위법한 상태하에서 행해진 제1심의 수명법무사 증인신문결과를 증거로 삼은 것이 위법이 아니라고 판시한 원판결은 전기한 바와 같은 법률 위반을 답습한 또 하나의 위법을 범하고 있는 것이다.

제 6 点 원판결에는 적법한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실을 인정한 위법 또는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원판결이 지지한 제1심 판결에서 예거된 유죄의 증거라는 것은 모두 증거능력이 없거나 증명력이 없는 것들이어서 유죄의 자료가 될 수 없는 것들이다.

1. 검찰관작성의 피고인등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및 각 진술조서와

각 자필진술서 등은 전기 [제4점]에서 지적한바와 같은 이유로 증거능력이 없고

2. 상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관작성이 피의자심문조서 및 각 진술조서와 공소 외의 다른 피의자들에 대한 심문조서, 진술조서, 그밖의 사람들에 대한 진술조서, 위 사람들의 일부가 쓴 자필진술서 등은 제1심공판 이래 변호인측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았으며 그 때문에 실시된 제1심 수명법무사의 증인심문(74년 7월5일과 6일)에 있어서는 첫째, 피고인들의 심문 참여권이 고의적으로 박탈되었음은 진술(제5점)하였고, 둘째 변호인의 참여 및 반대심문권 행사하에 진술한 증인들의 진술내용은 한결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과 같은 범죄가 없었다는 것이고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자기들의 조서나 진술서는 임의로 사실을 말할 수 없는 상태에서 모든 사실 아닌 진술을 강요당하였던 것이라고 이구동성으로 답변하였던 것이다.

3. 그렇다면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전기의 각 조서 및 진술서 등은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오히려 그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인정할 수 없게 되었고(실사 조서 말미에 기명 무인사실을 시인했다는 점에서 조서와 진정성립은 인정된 것이라 보더라도 증명력은 태무한 것임) 수명법무사작성의 증인심문조서 또한 그 내용이 피고인들의 혐의 없음을 밝혀주고 있는 것이어서 그 어느 것이나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는 것이었다.

4. 더구나 나머지 증인들에 대하여는 변호인의 참여조차 없는 가운데(피고인들의 참여불능은 물론이고 수명법무사의 심문만 강행되었으니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 및 변호인의 변호권을 규정하고 있는 소송의 절차법규에 위반되는 것으로 그 심문의 결과를 유죄의 자료로 삼을 수는 없는 것이며 그런 위법한 심문에 근거하여, 원진술자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조서나 진술서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도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유죄의 증거로 거시하였음은 위법이라 할 것이며 결국 제1심은 증거능력이나 증명력이 없는 자료를 유죄의 증거로 삼은 위법을 범한 것이라 아니 할 수 없다.

5. 그밖에 제1심 판결이 열거하는 여지의 증거를 아무리 검토하여도 제1심의 판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으나 위 판결은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실을 인정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인바 그러한 제1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하여 이를 지지한 원판결 역시 똑같은 위법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

제 7 点 원판결은 국가보안법 제1조의 「반국가단체의 구성죄」와 형법 제87조의 「내란죄」(동법 제90조 예비음모 선동포함) 반공법 제4조의 「반국가단체활동의 찬양 고무행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1. 무릇 「반국가단체」라 함은 국가보안법 제1조가 못박고 있듯이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만든 결사 또는 단체를 가르키는 것이고 「내란」이라 함은 국토를 침공하거나 국헌을 교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것을 그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여기서 「국헌교란」이라함은 형법 제91조가 명시하듯이 헌법 또는 법률이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과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기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함을 지칭하는 것이다.

2. 그런데 본건 피고인들의 소위를 본다면 그들은 현사회에서의 여러 가지 불법과 부정을 개탄하고 특히 사회정의와 민주정부의 확립을 촉구하는 의사표현의 방법으로서 광범한 학생데모를 기획하고자 서로 모여서 논의를 하였거나 또는 그런 데모와 관계없이 유신체제하의 정치, 사회 등에 관한 시국담을 나누고 청년학생으로서의 책무를 다짐하였던 것이니 그들이 소망한 민주주의와 국민기본권의 회복은 우리나라 헌정질서의 궁극적 이념이요 목표임으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그 어느모로보나 반국가 혹은 국헌교란에 문제될 여지가 없는 것이다.

3. 따라서 피고인들에게는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목적」 또는 「국헌을 교란할 목적」이 전혀 없었음이 분명하고 더구나 그런 목적을 가진 단체를 구성하였다고 볼 증거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적어도 「단체의 구성」이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최소한의 기본적인 골격이라도 갖추어야만 할 것인데 수명의 학생들이 몇차례 모여 학생운동에 관한 논의를 한 것만으로는 단체의 구성이라고 볼 수 없다.

나아가서 피고인들이 폭동을 기획한 사실은 더욱 없고 오직 학생데모를 논의하였을 뿐이다.

4. 설령 학생데모가 일어났을 경우에 민중의 호응을 받아 폭동화될 것이라고 가상을 하더라도 국헌교란의 폭동이 직접목적이 아니었는데 단지 파급효과로서 폭동이 예상된다하더라도 그것은 내란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판례임으로(1968. 3. 5) 가상적 연쇄반응을 이유로하여 학생데모를 곧 내란요건으로서의 폭동으로 예단함은 큰 잘못이다

할 것이다.

5. 결국 원판결은 본 피고인들의 일부가 데모를 구상한데는 현정부에 대한 비판적의도가 작용하고 있음에 집착하여, 현재의 상황 아래서 시도되는 민주회복운동 내지 반정부적 학생데모의 목적을 국가변란이나 국헌교란의 목적과 혼동 내지 동일시하여 위 두 목적범의 범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그리고 대규모의 학생데모를 감행하는 일이 곧 폭동과 동격의 물리적 파괴행위가 되는 것이라고 폭동의 범리를 잘못 해석한 허물도 있다 할 것이다.

6. 그리고 반공법 제4조 제1항에 규정된 반국가단체의 찬양동조행위라는 것은 최소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인데 本件 피고인들은 우리나라의 현실에 대하여 걱정하면서 그 부조리를 바로 잡기 위하여 비판적인 언론(대화나 문구)을 행사하였던 것이고 달리 그들에게 북한공산집단을 이롭게 하려는 의도가 없었음을 알기에 족한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우리나라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서 국민기본권행사의 일면을 보였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들의 현실비판적인 언동을 반국가단체의 동조행위에 틀림없다고 하여 제1심 판결을 재확인한 것은 필경 반공법 제4조 제1항의 범리를 오해하였기 때문이라고 본다.

제 8 点 원판결에는 이유불비의 위헌이 있는 제1심 판결을 그대로 답습한 위법이 있다.

1. 원판결이 지지한 제1심 판결은 32명의 피고인들에 대한 수백 항에 달하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그 증거제시에 있어서 어느 피고인에 대한 어느 사실을 어떤 증거에 의하여 인정한다는 것인지를 알아 볼 수 있도록 피고인별로 구분하여 밝히지 아니하였다.

뿐만 아니라 각 피고인들에 대한 법률적용에 있어서도 어느 사실에 대하여 어느 법조를 적용한 것인지를 개별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2. 무릇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1항과 군법회의법 제368조 제1항에서, 유죄판결에는 그 판결이유에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특정피고인에 대하여 인정되는 특정의 사실에 관하여 특정의 증거를 개별적으로 밝히고 그 중 어느 범죄사실에 대하여 어떤 법률을 적용하였는지를 객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분명하게 기재함으로써, 사실과 증거 및 법률관계를 명시하여 판결논리와 납득의 기능을 다

하도록 함에 있다 할 것이다.

3. 그런데 위의 제1심 판결은 다수의 피고인에 대한 다수의 판시 사실에 대하여 총체적 일괄적으로 증거와 법조를 나열함에 그쳤기 때문에 특정 피고인에 대한 어느 범죄사실에 대하여 무엇을 증거로 삼았으며 특정의 판시 사실에 대하여 어떤 법조를 적용하였는지를 구별할 수 없게 하였으니 이는 1974. 7. 26자 대법원 전원회의부의 판결에도 위반되는 이유불비의 판결이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제1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하여 변호인의 항소이유를 배척한 원판결 역시 이유불비 또는 범리오해의 위법을 면할 수 없다고 본다.

따라서 위와 같이 여러 위법을 내포하고 있는 원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하는 뜻에서 이 상고에 이른 것이다.

항 소 이 유 서

피고인 도 예 종
인 번 333 번
서울구치소 재감 중

본 적 경상북도 대구시 [redacted]
주 소 경상북도 대구시 [redacted]
성 명 도 예 종(都禮鍾)
생년월일 서기 1924년 12월 25일생
직 업 삼화건설주식회사 회장
죄 명 대통령 긴급조치 등 위반

항소요지

서기 1974년 7월 11일 비상보통군법회의 재판관으로부터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기실 항소인으로서 이번 사건에는 전연 관계된 사실이 없음으로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무죄를 주장하는 바입니다.

내 용

본인의 공소장 모두에 재론한 인혁당 관계에 대해서는 이미 10년 전 1964년 인혁당 사건 시 본인이 검사앞에서 진술 및 법정에서의 진술 그리고 검사 조서 및 법원의 확정판결문에 명시된 바와 같이

1. 인혁당은 조직된 사실이 없으며 따라서 본인도 당이 없는 당수가 될 수 없으며 물론 강령규약도 조성된 바 없습니다.
2. 역시 공소장 모두에 재론된 김상한과 김배영에 대하여
 - 가. 김상한은 본인은 전연 모르는 사람입니다. 1974년 7월 8일 본 건 변론공판에서 김종길(우홍선 등 변호인) 변호인이 변론 시 「김상한은 본 변호인과는 친구사이였으며 월북 전 동아대학교수로 있었고 미첩보부대

에 의하여 월북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 가족이 김상한 월북 후 미국으로 이민갔다는 사실은 만약 김상한이가 간첩이라고 한다면 더욱 미국으로 우리나라 정부에서 이민을 허가할 수 있겠는가」라는 사실로 설명이 된다고 봅니다.

나. 김배영에 대하여는 본인은 공부하러 일본으로 간 사실외에는 모릅니다. 1967년 10월-11월경 김배영 사건으로 인하여 본인이 중앙정보부에서 25일간 취조를 받은 후 무혐의로 석방된 사실이 있습니다. 역시 김종길 변호사가 1974년 7월 8일 이 건 변론 시 「김배영 사건의 변론을 맡아보았는데 검사조사에서나 법정에서의 진술도 일본으로 갈 의사외에는 없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히 설명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3. 본인이 본건에 관계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하여
가. 객관적으로는 본인이 혁신계 인사와는 어떤 이유에서든 접촉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관혼상제의 초청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나. 1967년 8월 25일 출감 후로는 정치와 손을 끊기 위하여 사업계에 투신을 했고 한때나마 혁신계에 관여한 사실에 대하여 깊이 뉘우쳐 우리나라 혁신계의 올바른 존립은 민주주의적 통일이 성취된 이후가 아니면 불가하고 통일은 또한 높은 국민소득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에 어떠한 인사와도 정치에 대한 논의를 하지 않는다는 신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 사건내용이나 법정진술을 통해서도 능히 추단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본 건에 본인을 제외시키고 소외시킨 사실입니다. 가령 본인이 본 건에 가담을 자청했더라도 거부당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미 본인은 혁신계를 떠났고 또한 혁신계에서도 본인을 혁신계로 간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4. 공소장 1-6번 까지의 범죄사실 전부가 허위조작된 사실이며 그 작성 경위는

가. 검사조서 작성 시 본인이 중정에 체포되던 날인 1974년 4월 20일-25일까지 철야취조를 받고 4-5일에 걸쳐 고문을 당한 311호실에서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전방의 출입문을 열어 놓고 검사님이 취조를 하셨다는 사실

나. 검사님에게 중정의 조서가 사실이 아니라고 하여 진실을 밝히려고 하면 검사님은 그렇다면 취조할 수가 없고 중정에 가서 사실대로 조서를 고쳐오라고 하여 진실을 밝힐 수가 없었습니다.

다. 모든 상황이 당시로는 이미 검사조서와 중정조서를 일치시킨다는 확고부동한 방침은 본인으로서도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진실과 일치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하여 하나의 불가항력이었습니다.

5. 제1사실인 이재문과는 1971년 길거리에서 우연히 만나 차 한잔도 하지 않고 헤어졌기 때문에 인사말 외에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6. 서도원에 대하여 본인이 요통으로 누워있을 때 주변인사들의 권유로 13년만에 침을 맞기 위하여 접촉했습니다마는 정치관계를 논한 사실은 없습니다.

7. 이수병에 대하여는 두 번 만난 사실이 있으나 대화 내용은 이수병이가 현재 저는 외국어학원경영에 참여하고 있으며 무허가가 아니고 허가만 얻을 수가 있다면 어떠한 사업보다도 기획성이 있는 사업체입니다. 선생님으로서 외국어학원을 경영하신다면 ①두 내외분이 교육계출신이고 두분이 모두 외국어를 잘하시니까 이상적인 사업체입니다. ③ 회사형편상 서울로 이주하신다니까 부인이 경영하기에도 알맞은 업체입니다. 이외에도 동대문 시장에서의 지물점, 을지로에서의 합판전문건재상, 제가 지물상을 하고 있는 녹번시장에서의 미곡매매점에 약 3-4만원 정도를 투자한다면 1할 정도의 이윤이 보장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학원허가 등 알아 볼테니까 서울출장 시에 연락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선생님 회사에서 시민 아파트를 99세대 건립 중에 있다니 제가 지물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부도배를 하청주신다면 모든 비용을 제하고도 약 70만원 정도의 이윤이 나옵니다.」 등의 이야기를 주고받고 했을 뿐 정치에 대한 이야기는 일체 나오지 않았습니다.

본인으로서 이수병이가 혁신계 인사와 접촉이 있다는 사실자체를 본인은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8. 지도부니 지도위원이니 하는 말은 본인은 중정의 취조에서 비로소 처음 들었을 뿐 본인은 전혀 모르는 사실입니다.

9. 본인집에서 압수된 책은 철저한 반공서적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범법하지 않고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한때의 잘못으로 3년 징역을 산 전과자입니다. 징역을 통해서 잘못을 뉘우치고 복역 후로는 성실하게 이 세상을 살아 왔고 국가에 대하여는 더없이 고맙게 생각해왔습니다. 이 이유로서는 전과자인 저에게 사회생활을 하계끔 즉, 1년 7-8억원 이상의 국가건설에 참여를 보장해 주었기 때

문입니다.

뜻밖에도 이번 사건에 본인을 관련시킨 것은 인혁당사건의 주범이라는 단 한가지 이유 때문에 유당무적계도 사형을 선고 받고보니 참으로 표현할 수 없는 억울한 심경입니다.

그러나 본인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신봉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인격과 권위가 있는 법정에서 본인에 대한 사실은 기필코 밝혀질 것이며 따라서 본인은 무죄가 될 것을 확신하는 바입니다.

서기 1974년 8월 일

서울구치소 재감 중

항소인 도 예 중

위 본인의 무인임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입회교도관 김성용

항 소 이 유 서

피 고 인 도 예 중
위 변호인 변호사 황 계 룡

위 피고인에 대한 비상 고등 군법회의 74고군령 항 제15호 대통령 긴급 조치위반 등 피고사건에 관하여 위 피고인의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합니다.

다 음

피고인 도예중에 대한 본 건 공소사실은 원심 판결이유 기재 사실과 같은 바

1. 원심은 증거를 잘못 판단함으로 인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아니면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습니다. 즉 원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 도예중에 대하여 사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가) 원심은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도예중은 국토를 침정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의식이 있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내란죄의 성립에는 국토침정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어야 하고 그 목적이라 함은 이를 직접의 목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직접의 목적을 하지 아니하고 그 폭동을 연유로 하여 새로 발생할 수 있는 다른 폭동에 의하여 국헌문란의 사태의 현출을 기하는 것은 내란죄로 다스릴 수 없을 뿐 아니라 직접적으로도 국가의 기본 조직을 강압으로 해산 또는 그 기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자는 것이 아니었다면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음모하였다고 볼 수 없는 바 (대법원 1964.3.5. 판결 66도 1056호)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 도예중은 1964. 7. 하순 경 이미 제출한 바 있는 세문사 출판 해방20년 기록편 705페이지에 기재된 인민혁명당 사건의 검사의 항명란의 내용과 같은 소위 인민혁명당 사건으로 인하여 피검되어 반공법위반으로 복역하고 출감한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사업에

중사하였을 뿐 정부를 전복하여 공산주의 국가를 건설할 목적으로 활동하였거나 공산주의적 통일을 위한 혁명 역량을 구축하기 위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과 회합한 사실도 없고 공소장 기재와 같이 소위 남파간첩들의 비밀지하당인 인민혁명당을 재건하여 전국적으로 조직적인 학생대모를 선동한 사실이 없으며 압수된 서적만으로 이를 인정할 자료로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미 10년이 지난 위 인혁당 사건을 기초로하여 피고인 도예중에게 공산주의 국가를 건설하여야 된다는 신념이 있고 그 실현을 위한 목적의식이 있었다고 인정하였음은 분명히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나)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구성죄에 있어서 단체(결사 또는 집단)라고 함은 공동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다수인의 지속적 결합체를 말하고 누가 그 단체의 구성원이 되는 하는 것은 아무런 제한이 없다 하더라도 단체로서의 위력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구성인이 수명인 단체는 다중은 될 수 있을는지 몰라도 반국가단체에 해당되지 않을 뿐 아니라 형식상 국헌을 위배하여 조직된 단체라 하더라도 그 조직과 주장이 비과학적이고 실현불가능한 상태의 조직에 불과한것인 경우에는 국가보안법상의 결사 또는 집단에 해당된다 할 수 없는 바(대법원 56.6.29. 판결)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 도예중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한 단체를 조직한 사실도 없고 이에 가담한 사실조차 없으며 공소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인민혁명당 재건을 위한 공산 비밀 지하조직인 경북지도부 및 서울지도부를 누가 주동이 되어 즉 수괴는 누구이며 몇 명으로 조직된 것인지 불분명할 뿐 아니라 상피고인 전창일의 1974.6.19.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 도예중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고 상 피고인 우홍선으로부터 피고인 도예중이 위 지도부의 지도위원으로 추대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은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였고, 상피고인 하재완의 위 같은 공판기일에 저의 피고인 도예중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고 1971.4.15.경에는 상 피고인 서도원이를 만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상피고인 서도원이의 위 같은 공판기일에서의 1971.4.15. 상피고인 하재완이를 만난 사실도 없고 반독재 구국선언문을 써준 사실도 없으며 하재완으로부터 경북대학교 학생대모 이야기를 들은 바도 없고 다만 1973.10. 중순경 피고인 도예중을 만난 사실은 있으나 정치이야기는 한마디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상피고인 이수병이의 위 같은 공판 기일에서의 피고인

도예종은 잘 아는 선배이지만 동 피고인을 지도위원으로 추대한 사실이 없고 부탁한 사실도 없으며 누구에게도 지도위원을 추대했다고 말한 사실도 없고 1974.1.중순경에는 피고인 도예종을 만난 사실조차 없으며 동인을 만났을 때도 정치이야기는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상피고인 송상진의 위 같은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 도예종 동 서도원을 지도위원을 추대하자고 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상피고인 우홍선의 위 같은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 도예종을 지도위원을 추대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이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 도예종은 소위 인민혁명당을 재건하기 위한 반국가단체인 경북지도부 및 서울지도부를 조직한 사실도 없을 뿐 아니라 그 지도위원이 된 사실도 없음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위 상 피고인들이 경북지도부 및 서울지도부를 조직했다하더라도 그 조직의 규모와 그 주장만으로는 실현 불가능한 결사에 불과함을 알 수 있으므로 이를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라고 인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막연히 증거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하였음은 증거의 판단을 잘못함으로써 인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할 것입니다.

다) 원심은 피고인 도예종의 공판정에서의 진술을 믿지 아니하고 그 진술의 취지와 상치되는 검사작성의 위 동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심문조서와 기타 다른 증거에 의하여 본건 범죄사실을 인정하였으나 이는 공판중심주의의 원칙에 위배하고 채증을 잘못된 위법이 있다 할 것입니다. 즉 피고인 도예종 및 위 상 피고인들의 사법 경찰관 및 검사 앞에서 진술은 직접적인 고문 내지 협박의 결과에 의한 것일 뿐 아니라 조사과정에서 있어서 상당한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검사 앞에서 허위자백을 했고 경우에 따라서는 조사관이 불러주는 대로 진술서를 작성하였다는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심문조서 및 각 진술서는 결국 고문에 기인한 것으로서 증거능력이 없거나 아니면 그 진술의 임의성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공판정에서의 피고인 도예종 및 위 상피고인들의 진술을 채용하지 아니하고 이와 상치되는 즉 진술의 임의성이 없는 타의 증거를 채용하였음은 분명히 군법외의 법이 채용한 공판 중심주의의 원칙을 위반하고 채증법칙을 잘못된 위법이 있다 할 것입니다.

2. 원심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위반이 있습니다.

즉 군법외의법 340조에 의하면 법무사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반증의 조사 신청 기타의 방법으로 증거의 증명력을 다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적당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한 당사자주의적 소송형태를 채용하고 있어 이는 항상 방어에 입장에 있는 피고인에게 충분히 증명력을 다룰 권리 즉 반대신문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면 안된다는 규정으로서 반대신문의 실질적 권리를 배제하는 경우에는 위 법령 위반이라고 할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은 본 건 제 2차 및 제 5차 공판기일에 검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변론을 분리 심리하고 공동 피고인에 대한 변호인의 반대신문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습니다.

본 건은 검찰관의 논지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이를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공동 피고인등에 대한 사법경찰관 및 검사 작성의 서류가 타의 피고인에게도 사용될 증거임으로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그 증거의 관련성을 다루고 반증을 내세워 그 증거가치를 충분히 다루어야 할 권리가 보장되어 있음으로 공동 피고인에 대한 반대신문의 신청을 하였음에도 원심이 있는 공동 피고인 등(분리 심리하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증인과 다름 없음)에 대한 반대 심문을 할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변론을 종결하고 이를 유죄의 증거로 채용하였음은 분명히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 할 것입니다.

3. 원심은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 심히 부당합니다.

즉 원심은 피고인 도예종에 대한 본건 범죄 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이에 대하여 사형을 선고하였으나 설사 피고인 도예종에 대한 본건 범죄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오래된 사실이며 동 피고인이 다른 공동 피고인 등과 정치 이야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비판에 불과하며 공소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그들이 목적달성을 위해 행동한다 하더라도 실현 불가능한 점들을 종합 참작하면 피고인 도예종에게 사형을 선고하느니 보단 관대하게 처벌하여 재생의 길을 열어 주는 것이 오히려 형사 정책상 타당하다고 생각되고 위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 피고인에 대한 양형은 너무나 무겁다고 할 것입니다.

1974. 8. 12.

피고인 도예종의

변호인 변호사 황 계 룡

비상 고등 군법회의 귀중

항 소 이 유 서

피고인 서도원(徐道源)

서울구치소 재감중

본 적 경남 창녕군 [redacted]
 주소 경북 대구시 [redacted]
 성 명 서도원(徐道源)
 생년월일 1923. 3. 27. 생(51세)
 죄 명 대통령 긴급조치위반 등

상기 피고인은 1974. 7.11. 비상보통군법회의에서 대통령 긴급조치위반 등으로 사형을 언도받았는 바 사실과는 너무나 상위된 공소내용과 과중한 형량에 대하여 불복하고 아래와 같이 항소 이유서를 제출합니다.

기

첫째 경찰관이 작성한 조서 및 검찰관 관여 하에 작성한 피의자 자필진술서와 검찰관 작성의 조서 및 검찰관 관여 하에 작성한 피의자 자필진술서는 임의성이 없기 때문에 증거능력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공산주의자는 아니며 따라서 공산폭력혁명을 시도하였거나 학생데모를 유혈폭동화하여 정부를 전복할 것을 계획한 사실은 없습니다. 한편 본 피고인이 하재완, 이수병 등에게 반국가단체인 인민혁명당의 재건을 지령한 사실은 없으며 저를 서울지도부나 경북지도부의 지도위원으로 추대하였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으며 따라서 지도위원으로 취임할 것을 수락한 일도 없습니다.

지도위원 문제는 공소장대로 하더라도 경북지도부에서는 이 지도부를 “하재완, 여정남, 이재문, 송상진 등이 관장하여 조직을 확대하고 정부를

전복한 다음 공산주의 국가를 건설한다” 라고 되어 있으며 서울지도부에서는 “동조직은 우리 4인 지도부에서 조종 운영한다” 라고 되어 있음으로 전권이 4인에게 있으며 소위지도위원이라는 것은 아무런 실권도 실무도 없는 유명무실한 존재에 불과하며 4인 지도부원보다 우위일 수가 없다는 것이 자명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도적 임무에 종사하였다는 것은 성립될 수 없는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공소사실 전문에서 조총련 망원인 김태구 사건에서 혐의사실 등을 부인하여 무죄가 되었다고 하여 마치 범죄사실은 있는데도 무죄가 된 것 같이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김태구라는 사람은 정신병원에 두 번씩이나 입원한 정신착란증환자이며 이 사건에서 피고인 16명 전원이 무죄가 된 사건으로 전면범죄 사실이 인정되지 않았든 것입니다. 한편 하재완, 이재문 등과 접선하여 교양을 시키며 동조자로 포섭하고 북한방송을 청취하라고 하고 인민혁명당과 같은 공산비밀 지하조직을 재건하여 정부를 전복시킨 다음 복귀와 영합하여 통일된 공산주의 국가를 건설하려는 결의 하에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운운한 것은 전연 사실이 아닙니다. 공소사실 중

1항의 1969.7 중순경 하재완가에서 하재완 이재문등과 접선 회합하였다는 것은 본 피고인으로서 전연 기억할 수 없는 일이며, 더구나 이재문과 같이 만났다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 같습니다.

2항 1970. 8 일자미상 경 하재완가에서 여정남을 소개받았다는 사실은 년월일은 언제인지 모르겠으나 소개받은 적은 있지만 하재완에게 “우리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과거 인민혁명당과 같은 통일된 우리 세력의 조직화가 필요하며 우선 경북지역만이라도 좌파인사들을 규합 조직하여야 하고 우리가 정부를 전복하려면 4.19와 같은 민중의 자발적인 호응을 받는 폭력혁명의 길밖에 없으며 민중의 자발적 참여는 학생데모로 점화시켜야 된다. 앞으로, 이재문, 송상진 등과 상의하여 학생운동이 잘 되도록 해보라” 는 인민혁명당의 재건을 위한 공산비밀지하조직을 지령하였다는 것은 전연 사실 무근한 일입니다. 따라서,

3항의 경북지도부결성은 본 피고인은 전연 모르는 사실이며 사후에도 들은 바도 없습니다. 공소장과 같이 본 피고인이 그런 것을 지령하고 지도위원으로 취임하였다면 당연히 그 회합에 본인을 참석시켜야 할 텐데 참석시키지 않았다는 것은 본 피고인이 그런 사실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생각되며 한편 일심법정에서 상 피고인 전원이 이 사

실들을 부인하였습니다.

4항 1971.1, 일자 미상경 하재완의 질 하중언의 공부방에서 하재완, 여정남과 회합하고 하재완으로부터 경북지도부 구성상황과 지도위원으로 본 피고인과 도예종을 추대하였다는 보고를 받았다는 것은 사실무근한 일입니다. 이 집은 하재완의 형님집으로서 하재완의 모친이 조카들을 데리고 있으며 저의 친구인 하재완의 형이 자주 오며 본 피고인이 더러 다니는 집으로서 이 집에서 여정남을 만난 적은 있으며 한번인지 두 번 만났는지는 분명치 않으나 6항에 나오는 전태일 추도사를 쓰는데 참여한 적은 있습니다. 이 4항에서 여정남의 지도를 부탁받고 동인 등에게 말하였다는 “국제정세로서 자본주의 국가들의 경제적 몰락단계, 사회주의 국가의 경제력의 우세, 월남전과 같은 피압박민족의 참상, 민족해방운동의 전개 등으로 세계혁명은 더욱 발전되고 있다. 국내정세로서 해방 후 남로당의 혁명적인 조직은 파괴되고 4.19. 이후의 혁신계 조직은 5.16혁명으로 약화되어 혁명적인 조직이 옹기종기 발휘할 수 없으며 국제적인 분위기는 상승되어도 타민족에 비해 뒤쳐져 있는 실정이고 혁명은 젊은 사람이 정열을 갖고 하여야 하는 것인데 쿠바의 카스트로가 그 대표적인 예이며 우리 혁명의 가장 필요한 주체적 역량을 길러 우리 혁명을 우리 자신의 손으로 해결하여야 된다. 현재 남한은 노동력의 착취가 극심하여 계급대립이 현저하고 자본주의 경제의 모순으로 정부와 국민간의 사이가 벌어져 있다. 학생운동방향에 관하여 전국적인 학생데모를 선도로 하여 민중의 호응을 받아 폭력혁명으로 정부를 전복하고 과도적으로 반대세력과 연합정부를 수립하였다가 반대파의 제거를 통하여 우리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므로 학생운동은 그러한 목적과 연결시킬 수 있도록 조직적 운동으로 전개시켜야 한다. 사상이념을 높이는 방법으로 선배를 만나고 서적을 입수 탐독하는 방법이 있으나 이북에서 방송대학 강좌를 통하여 사상교양을 하고 있으니 평양방송을 청취하여 공부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라는 교양을 시켰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5항의 1971. 4.15경 피고인 자택에서 하재완의 부탁을 받고 경북대학생 씨클인 “정진회” 주최 4.19. 제11주년 기념 전국대학교 학생씨클 대항 학술토론회 때 발표할 반독재구국선언문의 초안을 작성 제공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그런 부탁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6항 1971.11.경 전기 하중언의 공부방에서 전태일 추도사를 작성해 주

기는 했으나 국민을 자극하고 정부를 불신비방하는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7항의 1972.3 중순경 하재완으로부터 “김일성의 제5차 조선노동당 전당대회에서 행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 보고문”을 빌려서 읽어보기는 했으나 이것이 남반부 인민들의 자주적 역량으로 정부를 전복하라는 지령으로 판단하고 이에 동조한 것은 아닙니다.

8항의 1972.9.말경 서울 청진동 소재 “야자수” 다방에서 이수병과 만나 이수병 자택에서 회합하면서 동인에게 “7.4 공동성명으로 남북대화가 시작되어 우리들의 목표인 공산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투쟁을 할 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믿어지며 육고를 치르면서까지 투쟁하여 왔는데 기어코 노동자 농민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 체제 아래 복지사회를 실현하여야 되겠다. 좌파세력이 너무 분산되어 있고 미약하기 짝이 없으니 재결합이 시급하다. 의거는 좌파세력을 규합하여 과거 인민혁명당과 같은 통일적인 조직으로 재정비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특히 서울에서 엄밀한 동지규합으로 조직을 구성하라는 등 인민혁명당을 재건하기 위한 서울지도부의 구성을 지령모의 하였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며 다만 7.4 공동성명 후 어찌면 4.19 후와 같이 혁신계의 활동이 용납되지 않을까하는 추측을 한 바 있음으로 그런 의미의 말을 한적이 있을 따름입니다.

10항의 1972.10. 초순경 이수병 자택을 방문하여 동인에게 “지난번 지시한 동지규합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되었는가 동 조직은 어디까지나 엄밀한 조직이라야만 된다. 우리의 신념인 공산주의 국가 건설을 위하여 대정부투쟁을 전개함에 무엇보다도 사상적인 연구가 긴요한 과제임으로 동지들의 사상적 이론교양의 자료로서 경북지도부의 하재완 동지가 몇일 밤을 세워가며 평양방송으로 녹취한 북한 김일성의 조선노동당 5차 전당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 총화 보고문을 수록한 것을 가져왔으니 이것을 탐독하여 교양을 높이고 앞으로 포섭되는 동지들의 사상적 이론교양의 자료로 하라” 는 지시를 하였다는 것은 사실과 틀립니다. 첫째 일자도 먼저 언급한 8항과 동일자이며 본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가져다 준 것이 아니라 하재완 피고인이 이수병에게 노트를 빌려주기를 하였으니 좀 전달해 달라고 하여 전달해 주었을 따름입니다. 조직문제 등은 전연 언급한 사실이 없으며 더구나 경북지도부 운운의 말은 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지도부의 존재가 사실이라는 것을 이수병에게 말한다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11항의 서울지도부 구성에 관한 사실은 본 피고인이 지령한 일도 사후에 보고를 받은 일도 없으며 지도위원 추대에 대하여도 보고 받은 일도 취임을 수락한 일도 없습니다. 소위 경북지도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본 피고인이 참석치도 안한 자리에서 본 피고인을 지도위원으로 추대하였다는 것은 비밀지하조직에 있어서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그리고 소위 서울지도부 구성원 4명중에 본 피고인과 교분지면이 있는 사람은 이수병 한 사람뿐이며 더구나 서울 사람도 아닌 대구에 있는 본 피고인을 지도위원으로 추대하였다는 것은 불합리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12항의 1973.10중순 도예종가에서 도예종과 피고인이 나누었다는 대화는 전연 사실 무근입니다. 그날 도예종씨가 허리가 아파서 굴신을 못한다고 하여 본 피고인이 침구술에 대하여 공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침을 놓아 달라고 연락이 왔기에 가보았더니 굴신도 못하고 누워있기에 침을 놓아주었던 바 즉석에서 많이 좋아졌으므로 동양의학 및 침구술에 대하여 한참 이야기를 하였을 뿐 정치문제나 시사문제 등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대화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13항의 경북대학에서 유신헌법을 반대하는 데모를 하는데 사용할 반독재민주구국선언문의 초안을 작성하여 주었다는 것은 사실 무근이며 그런 부탁을 받은 바도 없습니다.

14항의 1973. 11말경 이수병이 본 피고인 집을 방문하고 서울지도부를 구성하였다는 것과 본 피고인과 도예종을 지도위원으로 추대하였다는 것을 보고하였다는 것은 사실 무근일 뿐만 아니라 방문한 사실조차 없습니다.

15항의 1973.12 중순경 서울 청진동 소재 “야자수 다방에서 이수병과 회합하고 이수병으로부터 서울 지도부의 활동 현황으로 동 김용원 등의 하부조직으로 조직확대 사항과 계속 지도를 부탁 받고 동인에게 “우리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학생조직이 긴요하며 데모는 대중계몽과 자발적 참여로서 민중봉기로 유도하여야 되고 지난 10월 이후의 학생데모는 성공적인 것으로 생각되나 그와 같은 분산된 데모는 힘이 미약하여 정부전복에

까지 진전할 수 없다. 그러므로 전국규모로 학생을 일제히 거사시켜야 한다. 3월 개학기의 학생데모는 필연적이니 이를 조직화시켜야 되며 기 학생조직과 우리와의 연결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라. 학생조직과 우리와의 연결을 위하여 유능한 학생운동경험자 1명을 서울에 올려 보내어 합법구실로 삼락일어연구소 수강생으로 위장 등록케 할 터이니 잘 지도하여 서울학생조직에 임하라. 이 학생의 서울에서 활동비도 서울조직에서 부담하여야 되겠다. 우리는 공산주의 이론 연구로 동지들의 이념무장을 강화하고 조직을 리드하도록 역량을 길러라. 공산주의 이론 연구를 위하여 평양방송의 김일성 방송대학 강좌를 청취하는 것이 아주 체계적이고 이해하기가 좋으니 청취를 습관화하라는 등의 교양지도를 함으로서 반국가 단체의 구성과 내란을 모의하고라고 되어 있으나 사실은 그 전에 하재완으로부터 여정남이 서울로 가기로 하였으며 일어 강습을 받고 싶다고 하기에 삼락일어 학원을 가르쳐준 바 있음으로 이수병에게 그런 학생이 오지 않았더냐 물어보았으며 안왔다고 하기에 오거든 잘 지도해 주라고 부탁하였으며 학생데모에 대하여는 오히려 현정부가 학생데모로 전복될 그런 약체정부가 아니라는 것과 다만 10월 학생데모 때 보여준 바와 같이 학생들의 주장을 일부 들어주었으며 관대하게 처리한데 대하여 정부의 처사를 현명한 처사라 하였으며 서울지도부의 조직에 대해서는 전연 들은바 없으며 학생조직이나 공산주의 이론이나 평양방송 청취문제 등은 전연 말한 적이 없습니다.

16항 1973.12.중순경 본 피고인가에서 하재완과 회합하고 “현재 서울에서는 학생데모를 위시하여 종교계 언론계에서 학원의 자유를 부르짖고 구국기도회와 데모를 하고 재야 인사들의 시국선언과 유신헌법개정 청원서명 운동 등으로 사회혼란이 야기되고 더욱이 원유 파동으로 정국이 무척 혼란하므로 정권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 이때 전국적으로 조직적인 학생데모가 선도되어 민중의 호응만 받으면 쉽사리 정부를 전복시킬 수 있다. 우리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여정남을 상경시켜 서울대학을 중심으로 전국적인 학생조직을 형성시키고 민중이 호응할 수 있는 전국규모의 학생데모를 유발케하여 정부를 전복하도록 하여야겠다. 여정남을 상경시킴에 있어 서울지도부 요원인 이수병에게 연결시켜 동인의 지도를 받도록 하고 이수병은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에 있는 삼락일어연구소로 연락하라”는 지령을 하여 동 하재완으로 하여금 동 지령에 따라 동 여정남에게 그와 같은 임무를 부여하여 동년 12월 24일 동 여정남을 상경케하고

라고 되어 있으나 이날 하재완이 본 피고인을 찾아와서 여정남이 서울로 가기로 하었는데 위선 일어공부를 하고 싶다고 하니 일어강습소를 아는 데가 없느냐고 하기에 이수병씨가 강사로 나가는 삼락일어학원의 위치를 가르쳐 주었을 뿐 학생데모 등에 관한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17항의 1974.1 중순경과 2월 초순경에 하재완이 본 피고인 집에 와서 회합하였다는 것은 사실 무근이며 본 피고인 집에 그 무렵에 온 일이 없습니다.

19항의 1974.3 중순경 하재완이 본인 집에 와서 여정남의 서울에서 활동상황을 이야기하고 경북대학교 학생들이 3.21. 데모에 사용할 선언문 초안작성을 의뢰받고 "작년 11.5 경북대학 데모 때에 사용한 반독재민주구국선언문과 같은 골자에다 유신헌법과 대통령 긴급조치 등을 폐기할 것을 첨가하라는 지시를 하였다는 것은 사실 무근이며 온 적도 없습니다.

20항의 1974.4.3 22:00경에 발효된 대통령 긴급조치 4호의 발표를 보고 수사 정보기관에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얼마간의 의구심이 없는 것은 아니었으나 여정남이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에 관련이 있는지의 여부도 잘 모를 뿐만 아니라 고지한다는 것이 젊은 사람에 대한 배신행위 같아서 주저하다가 못한 것입니다.

21항의 1974.4.5. 본 피고인가에서 하재완과 회합하고 여정남의 은신처 등을 합의하고 15일 서울서 만날 것을 약속하였다 하나, 사실은 그 당시 여정남의 문제를 것처럼 중대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재완이 일간에 서울에 갈 일이 있는데 가면은 여정남을 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다고 하기에 저도 15일경에 친구관계로 서울 갈 일이 있으니 그때 이수병씨에게 여정남을 연락해 달라고 말해보자고 하였던 것입니다. 만일 당시 여정남이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에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중대시하였다면 10일간이나 천연스레 기다릴 수가 있었겠습니까

23항의 서울 "회" 다방에서 이수병은 만났으나 하재완은 전화를 몇 번이나 걸어도 처음에는 안왔다고 하다가 나중에는 왔다가 불일이 있어 나갔다고 하기에 만나지 못하고 그냥 대구로 내려 왔던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저는 반국가 단체의 구성원이 아니며 더구나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일은 없으며 내란을 예비음모하였거나 대한민국 헌법을 반대한 적이 없으며 대통령 긴급조치 1호를 비방한바가 없습니다. 다만 북한 방송을 청취하고 김일성의 제5차 전당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보고문을 읽고 이를 이수병에게 전달하고 4□3 조치 이전의 여정남에 대한 것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그 후에도 부득이하기는 했으나 여정남을 만났다는 것은 법을 위반한 것임으로 응분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 나이 50을 넘은 고령에 접어들었고 집에는 철없는 자식들이 이 애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나이에 철없이 굴었던 일과 국민으로서 다하지 못한 의무와 가장으로서 할 일을 못한 죄책감을 크게 느낀고 있으니 관대히 처분하여 주시면 여생을 선량한 국민으로 미력이나마 국가에 충성을 다할 것을 맹세합니다.

피고인 서도원 (徐道源)

위 모인은 본인의 모인임을 증명함

입회교도보 이제수

비상고등군법회의 귀중

항 소 이 유 서

피고인 서도원

위 피고인에 대한 대통령 긴급조치위반 등 피고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항소이유를 밝히는 바입니다.

다 음

원심판결은 사실을 그릇 인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 사실은 23개 항목으로 되어있습디만 피고인은 대체적으로 이를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여러 가지 사항에 관하여 진술하고 자필진술서를 써서 제출한 바 있습니다만 위 모든 것은 본의아니게 그렇게 된 것이라고 극구 변명하고 있습니다.

공소장의 전체 줄거리를 훑어 보면 피고인은 공산주의자로서 공산주의 사회건설 또는 인민혁명당 재건을 위하여 공산비밀지하 조직의 경북지도부를 구성하고 공소의 여정남을 뒤에서 조정 사수하여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을 조직케하고 학생데모 민중봉기등을 유발케하여 대한민국 정보를 전복하고자 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목적을 위한 행동 또는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전적으로 부인하고 있습니다.

항소심 비상고등군법회의에서는 공소 사실을 세밀히 검토하시어 사실을 정확히 인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심히 부당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피고인에 대하여 인정되는 어떠한 사실이 과연 극형에 해당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항소심 심판관 여러 분께서 신중히 고려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피고인으로 하여금 선량한 국민으로서 다시 재생의 기회를 갖을 수 있도록 깊은 배려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974. 8. 1.

피고인의 변호인 변호사 조성기
비상고등군법회의 귀중

항 소 이 유 서

피고인 하재완

본 적	경북 대구시	●●●●●●
주 소	경북 대구시	●●●●●●
성 명	하재완	
생년월일	1932년 1월 10일생(42세)	
죄 명	대통령 긴급조치위반법	

이 유

본피고인은 1974년 7월 11일 비상보통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자로서 이에 불복하여 아래와 같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나이다.

내 용

본피고인은 원적지인 경남군 이방면 응리에서 부친 하대곤의 3남으로 출생하여 이방국민학교를 거쳐 1946년 9월 1일 대구공업중학교에 입학 1948년 3월중 동교 3년을 중퇴하고 1950년 9월부터 1951년 10월까지 이방국민학교 교사로 근무하다가 동년 10월 1일 군에 지원입대 1958년 3월 10일 중사로 제대하고 동년 6월부터 상업, 양조장, 종업원으로 종사하다가 1962년 7월경 원적지에서 거남양조장을 위탁 경영하다가 1968년 3월중순경 양조장 매도로 대구시 남구 대봉동 201번지로 이사하여온 후 건축업, 출판업, 주택수리 매매업을 하다가 폐병으로 1972년 12월 하순부터 메추리 사육을 하여오다가 사료파동과 폐농양 재발로 폐업하고 치병 요양중에 있었던 자입니다. 1947년 4월경 대구공업중학교 2학년 재학 시 아무생각없이 상급생의 강요에 따라 대구공업중학교 민주애국학생동맹원으로 가입 활동 중 1948년 3월하순 경 대구지방소년원에서 군정청 포고령 위반으로 3개월간의 교화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당시 피고인의 연령은

16세 소년으로 아무 사상적 의식도 없었을 뿐 해방 후 정치적 혼란에 휩싸여 일시적 잘못을 저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3개월간의 교화를 마치고 갱생의 길을 찾기 위하여 원적지에서 부모슬하에서 근신, 가사에 종사 중 6.25 동란이 일어나고 동년 7월 17일 모함으로 창녕경찰서에 일개월간 예비검속된 사실이 있으나 당시 대부분 구형되었으나 본피고인은 무혐의로 석방된 것입니다. 그후 군에 지원 입대하여 많은 노력을 하여 육군특무부대에 전속하여 대공사찰의 일선에서 만 5년간 충실히 근무하여 지난 과오를 완전히 청산하였으므로 그 후 현지까지 아무런 사고 없이 살아왔던 것입니다. 1961년 3월초 경 친지의 권유로 당시 민주사회주의를 표방하는 청년운동을 하는 청년단체인 민주주의청년동맹에 가입한 사실이 있으나 평맹원으로 별활동이 없으므로 5.16후 많은 맹원이 구속되었으나 아무 일없이 본적지에서 가사에 종사하다가 1962년 7월부터 1968년 3월 중순까지 원적지에서 거남양조장을 위탁 경영한 관계로 그 동안 한사람의 민민청맹원을 만나보지 못하였고 공소장 전항에 기재된 내용과 같은 불온사상을 포지하지도 않았고 아무 모의도 한 사실 전무하고 상 피고인 서도원을 상면한 사실이 없을 뿐 공소장 전항의 내용전부는 허위 날조된 것이며 공소내용 또한 대부분 장기간에 걸친 혹독한 고문과 협박 등으로 사전에 작성된 각본에 의하여 취조관은 읽고 피고인은 받아쓴 자필진술서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 사법경찰관리의 모든 심문조서이며 검찰관심문조서는 피고인의 임의성을 완전히 박탈당한 상황하에서 중앙정보부에서 작성한 의견서대로 검찰관은 읽고 입회서기는 일방적으로 기록한 것이며 1차 검취를 마치고 5월 27일 공소를 제기해놓고 5월 29일부터 6월 8일까지 계속 고문과 협박 등으로 취조관이 미리 작성한 공소사실 32항과 똑같은 각본대로 읽고 피고인은 받아쓰지 않으면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상황하에서 자필진술서가 작성되었으며 그 자필진술서와 같은 내용의 조서에 의하여 중앙정보부 간부실에서 6월9일 작성된 것이 마지막 검찰심문조서이고 이 검찰심문조서 작성시도 미리 작성된 조서를 검찰관은 읽고 그 입회서기는 기록한 것이며 피고인의 임의성은 완전 박탈상황하에서 작성됨으로 피고인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공판과정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을 기대하고 허위조작한 것을 알면서도 모든 것을 순응한 것입니다.

공소사실 1항에 대하여

1969년 7월경 공소 외 이재문의 소개로 상 피고인 여정남을 피고인의 장남의 학력보완을 목적으로 가정교사로 입주시킨 사실은 있으나 공소

사실과 같은 목적으로는 입주시킨 사실없으며 상 피고인 송상진과 공소 외 이재문 등과 회합한 사실도 없음으로 반국가단체의 구성과 내란을 모의한 사실은 없습니다.

공소사실 2항에 대하여

1969년 7월경 상 피고인 서도원을 만나 회합한 사실 없음으로 공소사실 모두다 허위날조된 것입니다.

공소사실 3항에 대하여

1969년 7월경 피고인에서 상피고인 정만진 1차 방문한 사실있으나 피고인 사제(舍弟) 대학동창으로 사제를 찾아왔음으로 공소사실과 같은 회합을 한 사실 무하며 반국가단체 구성을 모의한 사실은 허위사실입니다.

공소사실 4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중학3년 중퇴한 자이며 건축업에 종사할 시기라 상 피고인 여정남을 지도 교양할 능력도 없으며 시간적 여가도 없으며 학생신분인 가정교사에게 어떻게 이복방생을 청취하라는 지시같은 것을 할 수 있겠으며 학생데모를 배후에서 조종했다는 등 공소사실은 전부 허위날조된 것입니다.

공소사실 5항에 대하여

1970년 8월경 상 피고인 서도원을 피고인가에서 상면한 사실 무함으로 여정남을 소개하고 인민혁명당 재건을 위한 공산비밀지하조직의 결성지령 등 반국가단체의 구성과 내란을 모의한 등 공소사실은 허위사실입니다.

공소사실 6항에 대하여

1970년 8월경은 피고인가는 대구시 남구 봉덕동 523-32에 이사한 후 4개월이 지난 시기임으로 공소장 기재장소인 대구시 남구 대봉동 201에 거주하지 않았으며 상 피고인 송상진 동 이재문 등과 회합한 사실은 더욱 없으며 인혁당의 재건을 위한 공산비밀지하조직의 경북지도부 결성 사실은 터무니없는 허위조작된 사실입니다.

공소사실 7항에 대하여

1970년 9월경 상 피고인 정만진과 회합한 사실이 없으며 당시 정만진

과 이시간 피고인가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공소사실 8항에 대하여

1971년 1월경 대구시 남구 대봉동 소재 피고인의 질(姪) 하중삼의 공부방에서 상 피고인 서도원 등 여정남 등과 회합한 사실 전무함으로 공소사실 등은 허위조작된 것입니다.

공소사실 9항에 대하여

1971년 4월 15일경 대구시 동구 범어동 소재 상 피고인 서도원 자택을 방문한 사실 없으며 4.19 제1주년기념 전국대학생씨클대회에서 발표한 선언문작성을 의뢰한 사실도 없으며 당시는 7.4 공동성명 전이라 만약 공소사실과 같이 북괴노선에 따른 외세배척에 의한 자주적 남북평화통일을 주장했으면 여정남 외 7, 8명이 동 선언문사건으로 현재까지 대구지방법원에서 미결사건으로 처리되지 않았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소사실 10항에 대하여

공소사실을 시인하오나 동 추도식은 사전에 경찰에 인지되어 거행하지 못하였으며 동 추도사는 사용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소사실 11항에 대하여

1972년 2월부터 3월중순경까지 20여 일간 피고인가에서 일제 라디오로 매일 05:00~06:30간 17:00~18:00간 2회씩 반복 방송되는 김일성대학강좌 평양방송을 청취하여 북괴 김일성의 조선노동당 제5차 대회에서 행한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문을 노트에 수록한 사실은 있으나 상 피고인 송상진과 공동으로 작성한 사실과 사상교양과 동지 규합의 교양 자료에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한 기소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피고인의 목적은 피고인 자신이 북괴실정을 연구하기 위한 것이며 동보고문을 청취수록하든 중 동년 3월중순경 피고인이 고향에 내려갈 일이 있어 2일분의 청취수록을 상피고인 송상진에게 부탁하여 이를 피고인가에서 상 피고인 송상진이 수록한 것을 본 피고인이 정리 대학노트에 수록하여 읽었으나 북괴의 선전활동에 동조할 목적으로는 청취 수록하지 않았습니다.

공소사실 12항에 대하여

1972년 3월중순경 상 피고인 서도원과 회합한 사실 없으며 동 보고문

을 청취수록한 노트 제공 탐독케한 다음 피고인의 장남 공부방을 아지트로 결정하였다는 공소사실 등은 모두 허위사실입니다.

공소사실 13항에 대하여

1972년 3월중순경은 상 피고인 여정남이 피고인가를 방문한 사실이 없으며 前示 북괴사업보고문을 수록한 노트를 제공 탐독케한 사실 등은 없습니다.

공소사실 14항에 대하여

1972년 4월경은 상 피고인 정만진은 본 피고인가를 모르고 동 여정남도 방문한 사실 없음으로 공소사실은 허위입니다.

공소사실 15항에 대하여

1972년 7월경 공소 외 이재문과 회합한 사실과 사업총화보고문이 수록된 노트를 동 이재문께 탐독케한 사실은 모두 허위입니다.

공소사실 16항에 대하여

1972년 10월초순경 피고인가에서 상 피고인 서도원과 회합한 사실 없으며 동인으로부터 보고문이 수록된 노트를 빌려달라는 말도 없으며 이를 제공한 사실도 없습니다.

공소사실 17항에 대하여

1972. 10. 일자미상 경 조만호 피고인과 피고인가에서 회합한 사실 없으며 더욱이 이재형은 전연 모르는 사람이었으므로 공소사실은 모두 허위 작성한 것입니다.

공소사실 18항에 대하여

1972년 10월경 피고인가를 상 피고인 조만호와 동 이재형이 방문한 사실은 있으나 회합한 사실없으며 그 때는 이재형을 모르고 그후 조만호로부터 이재형이라는 사람이라고 듣고 알았습니다. 그 당시 본 피고인은 다른 약속시간이 있어 식모에게 차만 대접하라고 말하고 가출하였으므로 두사람이 방에 들어가 前示 사업총화보고문이 수록된 노트를 탐독한 사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공소사실 19항에 대하여

1972년 12월 포고령 위반으로 도피 중인 이현세를 피고인 자택에서 피신시킨 사실있으나 당시 학생신분이고 언제 체포될지 모르는 학생에

게 북괴노동당대회에서 행한 김일성의 보고문을 수록한 노트를 제공 탐독케 하겠습니까. 그런 사실 없습니다.

공소사실 20항에 대하여

1973년 3월초경 피고인가에서 상 피고인 여정남 동 임구호 등과 회합한 사실 없습니다.

상 피고인 임구호에게 동 보고문이 수록된 노트를 제공 탐독케한 사실도 없으며 여정남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한적도 전무합니다.

공소사실 21항에 대하여

1973년 11월 초순경 상 피고인 서도원 자택을 메추리 사육관계로 몇 차례 방문한 사실은 있으나 공소내용과 같은 선언문초안 요청을 한 적도 없고 초안을 작성받은 사실 없으며 피고인이 동 선언문 초안에 가필하여 여정남에게 완성케한 사실 등 모두 허위사실입니다. 피고인은 문장력이 없습니다.

공소사실 22항에 대하여

1973년 12월 중순경 상 피고인 서도원 가를 방문한 사실은 있으나 공소내용과는 다른 여정남과 공소 외 이재문과의 충돌사건으로 대구에서 물의가 있어 동 여정남이 대구에 있기가 난처하여 취직 겸 일어를 공부하겠다고 함으로 전부터 지면이 있는 일어강습소에 나가는 이수병의 학원주소를 피고인은 몰라 동 피고인 서도원에게 문의하여 동 이수병이 가 나가는 삼락일어학원 약도와 인상을 말하고 여정남을 상경시킨 사실은 있습니다.

공소사실 23항에 대하여

1973년 12월 중순경 피고인가에서 상 피고인 송상진과 회합한 사실 없으며 자금을 요청한 적도 없을 뿐 여정남에게 상경여비를 제공한 일 없습니다.

공소사실 24항에 대하여

1974년 1월부터 2월초순경까지 서울에서 상 피고인 여정남 래구(대구로 오다)하여 2회에 걸쳐 본 피고인가를 방문한 사실은 있으나 공소내용과 같은 서울이야기를 들은 적 없으며 다만 이수병을 만나고 학원에 나가고 있고 취직을 물색중이고 이수병 소개로 김용원을 알게 되었다는 말을 들었을 뿐이며 2월 9일 자금을 준 일없으며 상 피고인 송상진으

로부터도 돈을 제공받은 사실 없으며 또한 서도원에게 전기와 같은 이수병을 만난 이야기와 여정남에게서 들은 이야기는 하였으나 공소내용과 같은 이야기는 한 적 없습니다.

공소사실 25항에 대하여

1974년 3월 18일 피고인가에서 상 피고인 여정남과 회합한 사실 없으므로 서울이야기를 들은 적 없으며 선언문작성을 요청받은 바 없으며 이를 동 서도원에게 이야기하여 지시 등 받은바 없고 선언문에 대한 지시 등 모두 허위사실입니다.

공소사실 26에 대하여

1974년 3월 22일 상피고인 여정남을 상면한 사실은 있으나 공소내용과는 달리 3.21 경북대 데모는 정보가 누설되어 실패한 말과 취직관계 이야기를 했을 뿐이며 돈을 제공한 일도 없을 뿐 돈을 요청받은 적도 없고 동월 24일 동 서도원과 회합한 일이 전연 없습니다.

공소사실 27항에 대하여

1974년 4월 3일 23시경은 피고인은 종형수(種兄嫂)가 사망하여 상가에 있는 관계로 대통령 긴급조치 4호의 발표를 못 듣고 4월 4일 지상을 통하여 알게 되었고 정부를 공상폭력혁명으로 전복시킬 목적으로 상 피고인 여정남을 통하여 민청학련을 조직케한 사실과 금품제공과 데모시 사용할 유인물 작성등 행위를 한 사실 없으며 동 여정남의 활동을 잘모르고 있었으므로 수사정보기관에 고지하지 않았습다.

공소사실 28항에 대하여

1974년 4월 7일 상 피고인 서도원을 만나 4월 15일 상경하여 포경수술을 해야하겠다고 말하고 동 여정남의 소식이 궁금하다고하니 동 서도원 피고도 4. 15경 상경할 일이 있으니 서울서 만나자고 하여 서울에 있는 질너집 전화로 연락하기로 하였을 뿐 공소사실과 같은 사실은 허위사실입니다.

공소사실 29항에 대하여

1974년 4월 15일 서울서 상 피고인 서도원과 회합한 사실 없으므로 공소사실 모두 허위사실입니다.

공소사실 30항에 대하여

1974년 4월 15일 서울 덕수계곡점에서 상 피고인 여정남과 상면하여 비로소 여정남으로부터 민청학련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여정남 사신의 신변이 위험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본 피고인은 16일 포경수술을 받아야함으로 상면 못할 것이니 몸조심하라하고 헤어졌을 뿐 공소내용과 같은 활동이나 배후선이니하는 지시 등은 허위사실입니다.

공소사실 31항에 대하여

1974년 4월 15일 여정남을 만나 수술한다는 말을 하였고 4월 16일 서울 종로4가에 있는 “동도사”에서 포경수술을 받았고 동일 20:00경 상 피고인 여정남을 만난 일없음으로 공소사실 등은 모두 허위사실입니다.

공소사실 32항에 대하여

1974년 4월 17일 상 피고인 여정남을 만난 일 없음으로 공소사실 모두 허위사실입니다.

피고인 하재완은 해방 후 혼란한 시기에 남같이 배우지 못하고 여러 번 어려운 시련을 겪고 생각한바 있어 직장도 버리고 군에 지원 입대 후 많은 노력을 하여 육군특무대부대에 전속되어 육군정보학교 육군특무학교를 마치고 공산당에 대한 상식은 남달리 가지고 있었으며 그 비판력도 배양하였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공산주의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내외문제연구소에서 발간하는 책자와 반공연맹에서 발간한 북괴문장집 중소이념논쟁론집 등을 탐독하였으며 최근에는 월간 북한이란 잡지 등을 매월 구독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생각하기로는 진정한 승공은 공산주의에 대하여 연구비판력을 배양하여야 하며 진정한 민주주의가 구현되어야 남북 대결에서 이념적으로 승리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만의 하나라도 공소사실대로 북괴와 영합하는 통일된 공산주의국가를 지지하겠다는 목적하에서 활동하여 그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보면 피고인은 과거 대공사찰기관에서 5년간 근무한 사실만으로도 공산당의 숙청대상이 될 것은 너무나 명확한 일이며 6명의 처자식의 장래 또한 비참할 것인데 무엇 때문에, 누구를 위하여 그와 같은 어마어마한 행동을 계획했겠습니까. 원래 인간은 자리로부터 출발한다고 했습니다. 그러한 일을 하다가 죽음을 당할 것이고 이루어 놓은 후 또 한번 죽음을 당하는 자신의 불행을 자초할 바보는 이 세상에는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명하신 재판장님.

본 피고인 하재완은 전술한 바와 같이 어린 소년 시 남같이 배우지 못한 것을 뼈저리게 느껴 제 자식들은 힘닿는데 까지 남과 같이 가르쳐 보겠다는 일념으로 노력해 왔으며 그것이 동기가 되어 상 피고인 여정남을 가정 교사로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불행히도 그 여정남이 민청학련에 관계되었고 피고인과 관계되어 국가와 사회는 물론이고 식국의 단란한 일가정도 혼란을 일으켜 그 책임을 통감하고 깊이 반성하는 심정으로 교화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피고인은 현재 사형을 선고받은 위에 지병인 폐병이 악화되어가고 탈흉증, 탈장으로 죽음 일보 전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현명하신 재판장님.

억울하게 극형을 선고받고 고민하고 있는 불쌍한 인간 하재완에게 단 한번의 갱생의 길을 주시면 남은 여생을 어린 5남매의 장래와 한가정의 행복을 위하여 충실할 것이며 힘이 닿으면 사회와 국가민족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 할 것을 굳게 맹서합니다. 마지막으로 원심에서 법률의 책임을 다하였는가 엄정히 살피주셔서 억울함이 없도록 공정하신 판결을 내려 주시기 간절히 바라나이다.

1974년 8월 일

위 피고인 하 재 완

위모인은 본인의 모인임을 확인함

교도보 최 호 성